



중앙 · 지방 · 공공기관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

2013. 10. 2.



안전행정부

중앙·지방·공공기관 안전책임관(CSO) 워크숍 계획

□ 워크숍 개요

- 일 시 : 10. 2(수), 14:00 ~ 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강당
- 참석대상 : 안전행정부 장관(주재), 제2차관, 중앙부처(41) 및 자치단체(246), 공공기관(67) 안전책임관 354명 등

□ 주요내용

- (인사말씀) CSO 역할의 중요성 등 강조(안행부 장관)
- 국민안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안전정책국장)
- 재난관리 3.0 (재난관리 협업행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재난관리국장)
- 재난안전 Smart Big Bo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상호 협조요청 및 토론(중앙·지방·공공기관)

□ 진행계획(안)

	시 간(180')		주 요 내 용	비 고
I 부 (80')	14:00 ~ 14: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장관
	14:05 ~ 14:25	20'	○ 국민안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안전정책국장
	14:25 ~ 14:45	20'	○ 재난관리 3.0	재난관리국장
	14:45 ~ 15:05	20'	○ 재난안전 스마트 빅보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15:05 ~ 15:20	15'	○ 휴식	
II부 (100')	15:20 ~ 15:48	28'	○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 중앙부처(1), 자치단체(3) 추진사례	4개 기관*7분 (담당 국장)
	15:48 ~ 16:33	45'	○ 기관간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 정책추진시 기관간 협조요청 사항 중심	9개 기관*5분 (CSO, 담당국장)
	16:33 ~ 17:00	28'	○ 종합토론(지자체 건의 등) 및 마무리 말씀	차관

목 차

1 총괄보고 1

- ① 국민안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3
(안행부 안전정책국장)
- ② 재난관리 3.0(재난관리 협업행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41
(안행부 재난관리국장)
- ③ Smart Big Board(재난정보 통합 시스템) 75
(안행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2 우수사례 81

- 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83
(경찰청)
- ②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95
(서울특별시)
- ③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성과와 과제 111
(경기도)
- ④ 화성콜 스마트 택시안심 서비스 119
(화성시)

3 **기관간 협업추진** **123**

- ①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125
(안행부)
- ② 구제역 및 AI 가축질병 방역대책 127
(농식품부)
- ③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133
(복지부)
- ④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통합방재센터 운영 136
(환경부)
- 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체험캠프 안전대책 139
(여가부)
- ⑥ 건설현장 안전대책 142
(국토부)
- ⑦ 겨울철 대비 화재 등 재난예방활동 추진 144
(방재청)
- ⑧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148
(산림청)
- ⑨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 활성화 151
(안전보건공단)

4 **부 록** **155**

1

총괄보고

- ① 국민안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3
(안행부 안전정책국장)
- ② 재난관리 3.0 (재난관리 협업행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41
(안행부 재난관리국장)
- ③ Smart Big Bo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75
(안행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국민안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13. 10. 2

안전행정부

순 서

- 1 왜 안전인가 ?
- 2 「국민안전종합대책」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4 안전정책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5 어떻게 일할 것인가?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 ①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
- ② 범죄 : 4대악 등 사회범죄, 강력범죄 등
- ③ 생활안전사고 : 자살, 교통사고, 추락, 익사, 질식 등
- ④ 안보 : 북한의 위협

1. 왜 안전인가 ?

5

■ 안전사고로 일년에 몇 명이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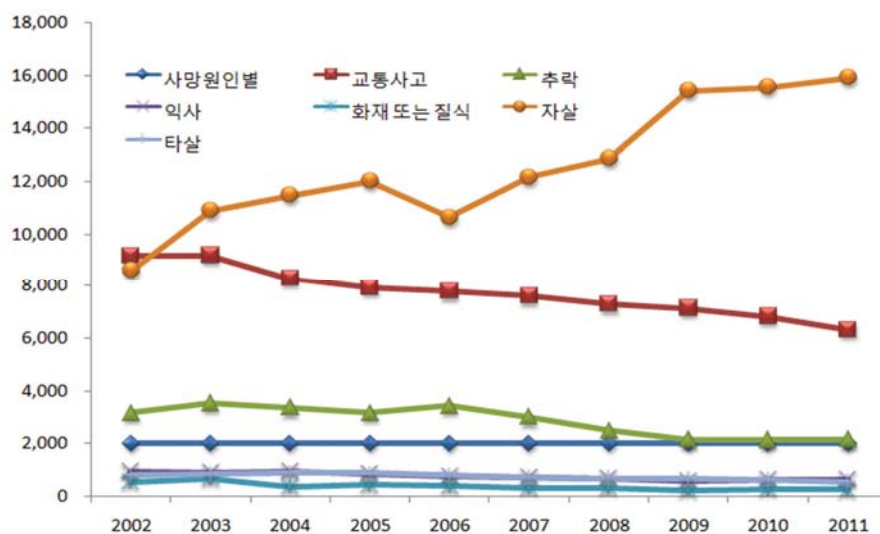
➡ 3만 2,445명(2011년 기준)

- 하루에 안전사고로 88명 사망
- 자살로 43명
- 교통사고로 15명
- 산업재해로 4명

1. 왜 안전인가 ?

6

■ 10년간 사망자 추세



1. 왜 안전인가 ?

7



- 1993년 부안 페리침몰
: 292명 사망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 501명 사망, 937명 부상

1. 왜 안전인가 ?

8



- 2003년 태풍 매미
: 132명 사망,
4조 7천억원 재산피해



-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 192명 사망

1. 왜 안전인가 ?



-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 5명 사망, 18명 부상



-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 7명 사망

1. 왜 안전인가 ?



-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 7만여명 사망, 37만여명 부상



- 2011년 일본 대지진
: 1만5천여명 사망, 3천여명 실종

1. 왜 안전인가 ?

11

▪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 2010년 19개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1위
- 10만명당 자살자수 31.2명으로 1위, 2위는 일본 19.7, 3위 프랑스 13.8
-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1.72명으로 1위, OECD 평균 7.28명
-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9.6명, 미국 3.5, 일본 2.0, 영국 0.4

▪ 우리나라 안전의 현주소 : 안전불감증 심각

- 우리 국민의 83%가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원인 : 적당주의(48.4%) > 안전교육 및 홍보 부족(24.8%) 순

1. 왜 안전인가 ?

12

부처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

▪ 정부조직법 제34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사무를 관장한다
- 종전 : 행정안전부장관은 ...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 · 민방위 · 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민안전 종합대책 발표(5.30)

2. 「국민안전종합대책」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13

■ 비전과 전략



2. 「국민안전종합대책」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14

■ 4대악을 포함한 3대 유형 21개 과제를 선정하여 관리

구분	① 유형 최근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② 유형 매년 많은 피해가 반복	③ 유형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
4대악 범죄 등	① 성폭력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식품안전 ⑤ 인터넷 음란물	⑪ 자살	
자연재난		⑫ 풍수해	⑲ 지진
사회재난	⑥ 조류 인플루엔자 ⑦ 유해화학물질 ⑧ 산업단지	⑬ 산불	⑳ 원자력 ㉑ 대형화재
안전사고	⑨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⑩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⑭ 전기(감전)·가스 ⑮ 붕괴 ⑯ 보행사고	⑰ 물놀이 ⑱ 승강기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15

1.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 지금까지의 정부대책은 사고 수습과 복구 중심
 - 사후 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 해빙기, 행락철, 장마(집중호우), 하계휴가, 개학기 등 시기별 선제적 현장 점검 실시
 -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수립(7월)
 - 여름철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17개 분야 현장점검 합동TF 운영(7.19~8.26)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16

- 계절별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실시

분류	봄철(3~5월)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겨울철(12~2월)
자연재해	가뭄, 황사	호우, 태풍, 폭염		대설, 폭한
붕괴사고		여름철 붕괴사고		해빙기 붕괴사고
에너지		전력 수급		전력 수급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사고 수학여행 교통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수학여행 교통사고	졸업식 사고
교통안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대설시 교통사고
산불	산불		산불	
생활안전	등산사고 지역축제 사고	식중독 사고 물놀이 사고	등산사고	
전염병	유원지, 여객선, 유도선, 자전거 안전사고		화재	AI 등 가축전염병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17

■ 어린이의 연령, 활동공간별로 안전사고를 유형화, 20개 분야 도출

연령	공간	구분	필수공간		보조공간		이동 등
			가정 내	보육·교육	다중이용시설	놀이공간	
영아 (0~1세)	손상		질식·깎임 삼킴 추락				
	보건범죄			식중독 산후조리원 감염			
취학전 아동 (2~6세)	손상		화상 추락		시설물사고(쇼파카트, 에스컬레이터 등)	놀이공간내 사고	통학차량 교통사고
	보건범죄			어린이집 확대 불량식품 식중독	유괴, 미아		
초등 학생 (7~12세)	손상				시설물사고(쇼파카트, 에스컬레이터 등)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
	보건범죄			성폭력 불량식품, 식중독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괴, 미아	레저스포츠 사고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을람물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18

2. 안전 컨트롤 타워 강화

■ 안행부 중심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국민안전 대책 총괄적·상시적 협의

- 안전정책조정회의(안행부 장관, 6회) 정례화, 실무회의 44회 운영

*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에 대한 제도를 개선, 대형 공장에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을 의무화

* 적조 대책시 지자체에서 적시 협의로, 국방부, 해수부, 해경의 지원을 적기에 받아 피해 최소화

■ 중앙-지방 재난안전책임관(CSO) 설치, 시도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확대

- 41개 중앙기관, 244개 자치단체 및 안전업무와 밀접한 공공기관(67개) CSO임명

■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

- 시도에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설치, 시군구에 안전총괄과 신설 또는 안전자치행정과 개편 등



<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 (5.9) >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20

3. 감축목표 관리제 실시

- 분야별 감축목표를 국민에게 공개, 주기적으로 목표달성 점검

분 야	정책목표
성폭력	▶ 미검률 매년 평균 10% 감축 ('12년 15.5% → '17년 9.1%) ▶ 재범률 매년 평균 5% 감축 ('12년 7.9% → '17년 6.1%)
가정폭력	▶ 재범률 매년 평균 4.5% 감축 ('12년 32.2% → '17년 25.7%)
학교폭력	▶ 피해경험률 매년 평균 10% 감축 ('12년 9.6% → '17년 5.7%)
불량식품	▶ 식품에 대한 안전체감지수 ('12년 67% → '17년 90%)
유해화학 물질	▶ 화학사고 인명피해 50% 감축 ('12년 67명 → '17년 33명)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12년 1.3명→'17년 1명) ▶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12년 31.6명→'17년 25명)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21

■ 성폭력 감축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12.1~7	'13.1~7	증감률
미검률	11.3%	15.6%	15.5%	14.3%	8.8%	△ 5.5%P
재범률	7.4%	8.1%	7.9%	7.6%	7.1%	△ 0.5%P
검거건수	18,065건	18,499건	19,386건	10,260건	13,741건	33.9%

■ 가정폭력 감축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12.1~7	'13.1~7	증감률
재범률	20.3%	32.9%	32.2%	29.1%	13.9%	△ 15.2%P
검거건수	7,359건	6,848건	8,762건	4,583건	9,571건	108.8%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22

4. 생활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 ① 성폭력·학교폭력 등 범죄발생구역, ② 침수 등 재난발생구역,
- ③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잦은 곳 등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안전요인 종합분석하여 제공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23

■ 생활안전지도 기대 효과

- (국민) 직장인 H씨는(39세,여) 성범죄 기사를 접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등학교 딸이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 둘까 고민

➡ '여성밤길 안전지도'와 '하룻길 안전지도' 등 여성과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안전한 지역의 정보를 제공받아 근심을 덜음

- (지자체) 자치단체장 A는 안전에 대한 투자 순위를 정하기 어려워 고민

➡ 산사태 위험지역, 침수 예상지역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빈발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안전환경 개선정책을 손쉽게 결정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24

5.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및 주기적 발표

■ 매월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조사하고, 6개월 단위로 평균치를 발표

※ 특정 사건이 전체 결과를 지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6개월 단위 발표

※ 1차 조사결과는 8.2(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기 발표

■ 국민의 체감도를 통해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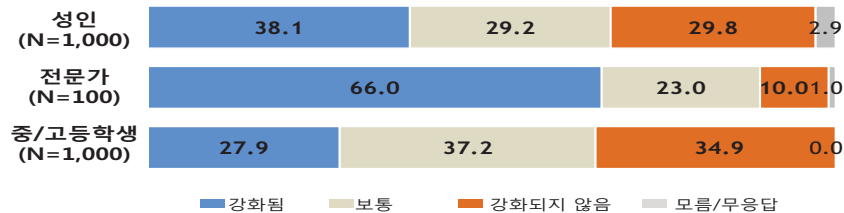
■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홍보 방안 강구

3. 무엇이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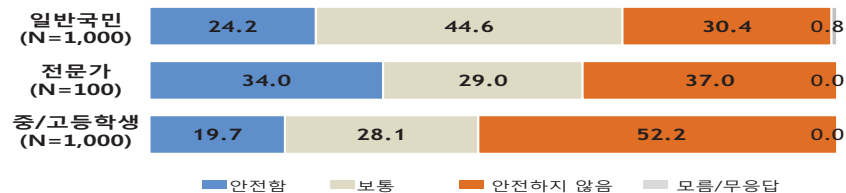
25

■ 1차 국민안전체감도 결과 (발취)

-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 강화 체감도



-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



3. 무엇이 달라지는가

26

6.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된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구성, 안전문화 캠페인 등 총괄
- 시·도, 시·군·구 협의회(경찰청·교육청·고용청 등 참여) 구성
 - * (중앙) 안행부 장관 /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지방) 자치단체장 /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 읍면동 단위의 안전문화 활성화 및 안전개선을 위한 안심마을 사업 추진



일상생활 속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활동 등 9대 실천운동 선정**, 언론·시민단체와 대대적인 캠페인 추진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27

■ 안전문화 로고



- 안전을 상징하는 녹색의 안전마크(+)
- 안전생활을 실천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심장(♥)
-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을 상징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28

■ 안전문화 9대 실천운동 과제

분 야	안전문화 테마	실 천 과 제
사회안전	안심 사회 (Safe Society)	①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② 클린 인터넷(폭력·음란물 NO) ③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생활안전	안심 생활 (Safe Life)	④ 1가정 1안전요원 ⑤ 비상구 확인하기
교통안전	안심 운전 (Safe Traffic)	⑥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⑦ 생활도로 30km/h 이하 서행하기
산업안전	안심 일터 (Safe Work)	⑧ 작업 전후 안전점검 습관화 ⑨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29

■ 안심마을 사업 추진

- 전국 공모를 통해 **10개** 시범지역 선정, 예산 지원 및 우수모델 육성
 - *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추진(1개소 5억, 총 50억 지원)
- 주민자치회 안전 시범마을과 연계, 활동실적을 평가해 단계적 예산 지원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활동 >



< 안심마을 시범사업 안행부 현장실사 >

3. 무엇이 달라지는가 ?

30

■ 참고 :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서울시)



서울 염리동 소금길 「지킴이집」 운영,
범인에게 알려 범죄 예방

4. 안전책임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31

■ 안전책임관 추진배경

- 기관내 안전관리가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면서 총체적인 예방활동 한계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미흡
- 대형사고 발생시 전체적으로 지휘, 조정하는 책임관 부재로 피해 확대

■ 안전책임관 구성

-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또는 안전업무 관련 실장 등을 지정(41개 부처)
 - (공공기관) 기관의 기관장(CEO) 또는 부기관장(안전관련 67개 기관)
 - (자치단체) 재난·안전 총괄부서 실장 또는 국장(244개 기관)
- ➡ 기관내 업무 전반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책임있는 안전관리 추진

4. 안전책임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32

■ 안전관리 업무의 기관내 컨트롤 타워

- 기관내 안전관리(예산 지원 등) 및 안전문화 운동 총괄, 지역안전 종합대책 수립
 - * 안전행정부에서는 정부 안전관리 전반을 총괄·조정 및 지원
- 기관내 안전관리 업무의 중복, 사각지대 총괄·조정 등 부서간 협업 추진

분야별 안전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대책수립 및 예방활동 등 책임있게 추진

■ 현장을 총괄적으로 조정·지휘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을 총괄적으로 지휘, 대형피해 예방
 - * 1차적으로는 소관 부서가 초기 현장지휘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지원
-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작성관리 총괄·지원

■ 신규 안전예산 적극 편성

- 안전관련 기관간 협업, 선제적인 예방활동 및 연구 실시
- 안전캠페인, 안전교육 활성화 및 지역 안전문화운동 예산 확보
- 교통·산업·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빈발지역 시설 개선사업 적극 추진 등

■ 재난 안전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 대형사고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계속사업 등은 금년 수준이상 예산 확보
-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 철저
- 안심마을 사업, 지방도 구조개선 등 안전관련 보조사업예산 적극 편성

■ 『지역 안문협』 조속 출범 및 '14년 안전문화예산 반영

- 현재까지 17개 시도 중 대구, 대전, 부산 등 10개 시도 출범
 - * 안문협 민간위원장 간담회 : 10.25 / 안양시 통합관제센터

■ 부처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 (부 처) 안문협과 협업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운동 공동 추진
 - * 고용부와 안문협 산업안전분과 공동주관으로 '안전수칙 범국민 캠페인' 추진(9.4)
- (지자체) 지역 안문협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2013 안전문화대상(12.17 / KINTEX)』 참여

- (부 처) 안전책임관,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 유공자 추천
- (지자체) 지역내 안전문화 유공자 추천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 * 우수사례 선정 지자체(광역 3, 기초 5)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 비상계획관 운용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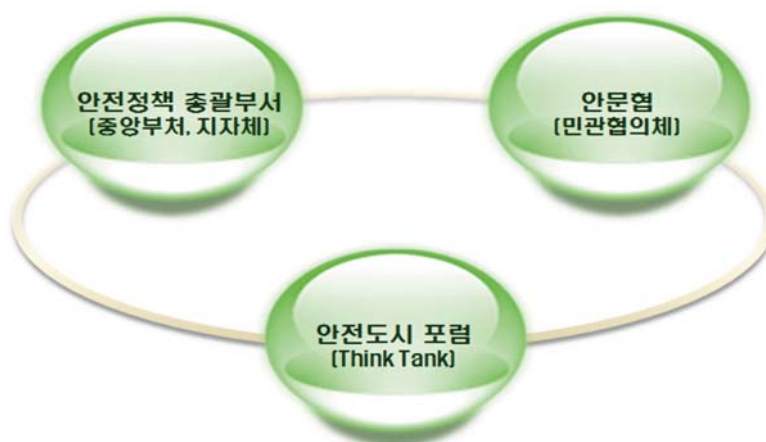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 ('12.8.23) , 중앙부처·시도 비상계획관 의무적 운용
 - * 중점관리업체 중 국가기반·국가중요시설 관리업체, 공공기관 등에 비상계획관 운용
- 정부기관(91), 중점관리업체(466) 등 비상계획관 557명(예비역) 지정·운용

■ 공공기관 비상계획관 운용 확대

- 비상계획관 역할을 비상대비업무 중심에서 재난, 보안 등 안전 전반으로 강화
 - * 비상시 : 비상대비업무 수행, 평 시 : 재난안전, 보안, 대테러 등 기타 부여한 임무 수행
- ➡ 공공기관에 비상계획관 임용을 확대, 공공기관 안전관리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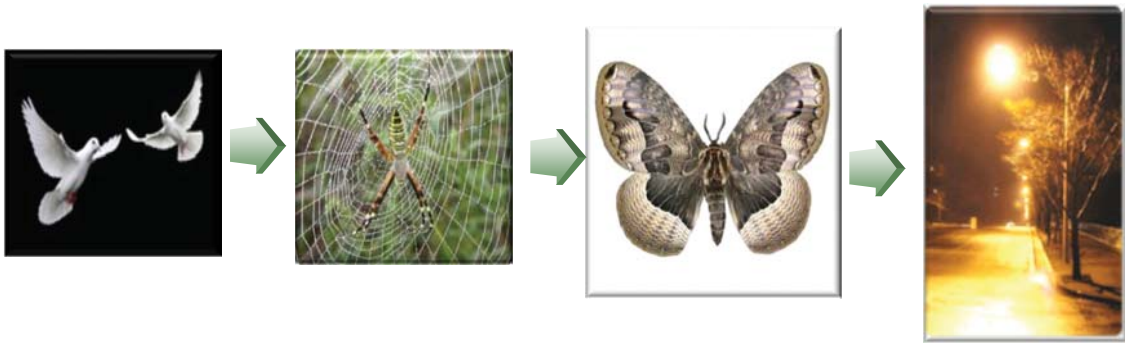
5. 어떻게 일할 것인가?

- 중앙 및 지역의 안전컨트롤 타워
-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안전불감증 해소



- 안전정책 콘텐츠 생산, 이론적경험적 근거 지원

- “왜? 왜? 왜 그럴까?” 라고 파고들어 근본 해결책을 찾는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 레마르크의 <개선문> 중에서

1. 우정
2. 사랑
3. 가족
4. [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안전 종합대책」 추진상황

2013. 10. 2

관계부처 합동

보고순서

- I** 현실진단과 추진방향
- II** 국민 안전관리 추진전략
- III**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
- IV**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 V** 각오와 다짐

I 현실진단과 추진방향

환경변화와 정부대책

환경변화

-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도 가속화 전망
- 세계화·산업화·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안전취약성 증가
 - * 전 세계적 신종플루('09.11), 불산사고('12.9), 노인교통 사고 사망자('12년 전체 34.6%)

정부대책

- 그간의 정부대책은 상황관리 중심, 사후약방문식 수습대책이라는 부정적 평가
-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미흡

안전인식과 추진방향

안전인식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7.19~25 /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100명

- 많은 국민들이 사회전반의 위험으로 부터 불안을 느낌
 - *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 : 불안하다(30.4%), 보통이다(44.6%), 안전하다(24.2%)
- 4대악 체감도 조사결과, 성폭력과 학교폭력 불안정도*가 높음
 - * (성폭력)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학교폭력)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 일반국민 38.1%, 전문가 66%, 새정부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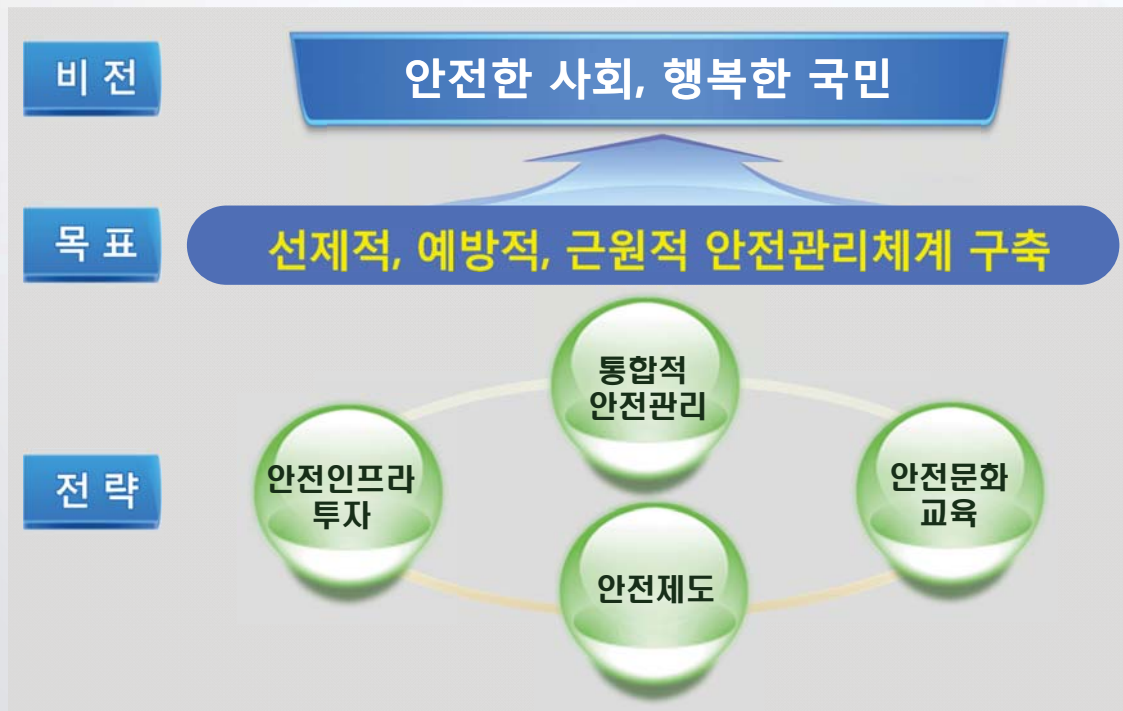
추진방향

부처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국정의지를 반영하여,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고자 함

5

Ⅱ 국민 안전관리 추진전략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비전 실현



7

1.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

안전관리 협력체계 개선

-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국민안전 대책 총괄적·상시적 협의
 - 안전정책조정회의(안행부 장관, 6회) 정례화, 실무회의 44회 운영
 - *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 제도개선, 여름철 안전관리 TF운영·점검 등 추진
- 중앙-지방 재난안전책임관(CSO) 설치, 시도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확대
 - 중앙(41개), 지자체(244개), 안전과 밀접한 공공기관(67개) CSO임명(정·부 1명)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각 부처, 기관별로 관리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 통합, 안전정보 DB, 생활안전지도, 안전지수 등을 포괄하는 포털 형태의 시스템 구축

8



<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 (5.9) >

9

2. 안전 강화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생활안전 지도 구축

-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 종합분석, 생활안전지도를 국민에게 제공('14년)
 - 경찰·지자체 역할 확대, 지역공동체 야간순찰 등 주민참여 활성화
 -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생활안전지도서비스 시범구축」 용역 착수보고회(8.23)
-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 사전준비 및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병행



< 여성·어린이 안전귀가길 >



< 범죄, 학교폭력 등 발생장소 >

10

생활안전 지도 구축 - 기대효과 사례

- (국민) 직장인 H씨는(39세,여) 성범죄 기사를 접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등학생 딸이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 둘까 고민

➡ '여성밤길 안전지도'와 '하룻길 안전지도' 등 여성과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안전한 지역의 정보를 제공받아 근심을 덜음

- (지자체) 자치단체장 A는 안전에 대한 투자 순위를 정하기 어려워 고민

➡ 산사태 위험지역, 침수 예상지역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빈발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안전환경 개선정책을 손쉽게 결정

11

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안전기준 통합관리

- 지역별 안전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안전지수」 개발·공개('14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위험예보제」 확대 시행('14년)
 - 공중파·케이블TV, 지하철 모니터 등 활용, 재난·안전사고 예방요령 전파
- 부처별 상이한 안전기준을 통합관리, 기준등록 의무화 및 심의·조정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예방대책 강화

-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전담기구 설치
 - * 국과수 : 법안전센터(안전사고 원인감정), 재난안전연구원 : 재난원인 조사센터(재난원인 전문조사)
- 국과수·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안전사고관리협의체』 구축

12

3.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교육 생활화

재난안전 R&D 기반 강화 및 예방투자 확대

- 방재연구원을 「재난안전연구원」으로 개편(3월), 중추 연구기관 육성
-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R&D 투자 확대('12년 1,780억→'17년 5,400억)
- 선진국 수준으로 예방투자 확대

체험식 안전교육 및 학교 정규교육화 추진

- 어린이 체험식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의식 조기 배양
 - 안전체험관 확대(6개소), 소방서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운영 확대 등
- 학교 안전교육 점검 강화 및 정규교육화 추진(교육부 협조)

13

Ⅲ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

1. 전국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범정부적인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된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구성, 안전문화 캠페인 등 총괄
 - 시·도, 시·군·구 협의회(경찰청·교육청·고용청 등 참여) 구성
 - * (중앙) 안행부 장관 /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지방) 자치단체장 /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일상생활 속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활동 등 9대 실천운동 선정**, 언론·시민단체와 대대적인 캠페인 추진

15

안전문화 로고 및 9대 실천과제

안전문화 로고 (대국민 공모작)		• 로고의 모양은 안전을 상징하는 안전마크(+)와 안전생활을 실천했을 때,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을 상징 • 굳건한 안전의식은 깨질 수 없는 행복함을 만든다는 의미 (안전=행복)
----------------------	---	--

	분 야	안전문화 테마	실천운동 과제
안전문화운동 9대 실천과제	사회안전	안심 사회 (Safe Society)	①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② 클린 인터넷(폭력·음란물 NO) ③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생활안전	안심 생활 (Safe Life)	④ 1가정 1안전요원 ⑤ 비상구 확인하기
	교통안전	안심 운전 (Safe Traffic)	⑥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⑦ 생활도로 30km/h 이하로 서행하기
	산업안전	안심 일터 (Safe Work)	⑧ 작업 전·후 안전점검 습관화 ⑨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

16



< 안전문화운동 중앙협의회 출범(5.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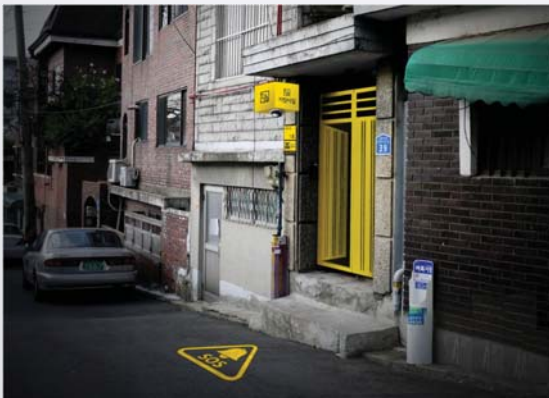
< 안전문화 운동 로고 및 실천과제 발표(7.4) >

17

2.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모델 육성 및 전국 확산

- 전국 공모를 통해 10개 시범지역 선정*, 예산 지원 및 우수모델 육성
 - * 안심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확정(9월),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추진(1개소 5억, 총 50억)
- 주민자치회 안전 시범마을과 연계, 활동실적을 평가해 단계적 예산 지원



서울 염리동 소금길 「지킴이집」 운영,
범인에게 알려 범죄 예방

18

IV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1.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성폭력 대책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재범단속 강화
- 16세 미만 강간범죄 법정형 상향(5년이상 → 7년이상), 집행유예 배제 추진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30개 → 60개)

가정폭력 대책

- 주취자 「치료보호제도」 도입, 주취상태 가해자 유치장 일시 격리 추진
- 현장출입·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확행으로 피해자 보호강화
- 노인·아동 학대 예방과 지원체계 강화(아동학대자 처벌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

- 폭력써클 엄정대응 및 재범방지 선도 강화(중점 파악·해체)
- Wee 프로젝트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증원
- CCTV 성능개선 및 관제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반영

불량식품 근절 대책

- 불법적 부당이득 최고 10배 환수, 형량하한제 적용 확대
-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안전하고 저렴한 식품접객업소 확대
* 가격·위생·청결·서비스 등 우수업체 선정,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및 위생·청결기준 강화
- 수입식품 「사전에측 수입검사 시스템」 구축, 수입자 책임·이력관리 강화

23

2. 매년 많은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

자살방지 대책

- 자살원인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5~12월)
- 자살시도자*를 정신건강증진센터-지역사회 등과 연계관리
* 응급실 내원자 4만명 추정, 8%만 상담치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홍보 강화
*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복지부)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7.26)

풍수해 대책

-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신속한 예·경보, 피해예방 요령 집중홍보
- 취약시설 전수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24

3. 대규모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

지진 대책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 지진 및 지진해일 실시간 예측기술 고도화
- 유치원, 초중고 지진대응교육 반복 실시, 안전생활화

원자력 안전 대책

- 검사대상을 부품·용역업체까지 확대, 정기검사 강화(항목, 기간 확대)
- 지역참여(영광3호기 재가동 승인시 지역의견 수렴)를 통한 원전 현안 해결

대형화재 대책

- 다가구 주택 등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등) 설치 의무화, 쪽방 등 시설지원
- 50층 이상 안전기준 강화, 고지대·골목길 등 관리강화(불법주차 강제처분 등)

25

4.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활동공간을 **꼼꼼히 분석**하여 개별 수요자에 맞는 **그들망 안전대책** 적극 발굴

사례 분석 : 어린이 안전사고

-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나,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09년 5.4명, '11년 4.2명 / 독일 3.7명, 영국 3.3명
 - 12개 부처가 법령에 따라 개별 관리,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발생, 어린이 발달 특성과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유형화
- ➡ **사고빈도·심각성** 및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20개 유형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수립(6.28)**

26

활동 공간 연령	구분	필수공간		보조공간		이동 등
		가정 내	보육, 교육	다중이용시설	놀이공간	
영아 (0~1세)	손상	질식·깎림 삼킴 완구안전사고 추락				
	보건범죄		산후조리원 감염			
취학전 아동 (2~6세)	손상	화상			놀이공간내 사고 물놀이 사고	통학차량 교통사고
	보건범죄		어린이집 학대 중금속 등 유해물질 어린이 급식			
초등 학생 (7~12세)	손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보건범죄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주변 유해업소 학교폭력	수련시설 안전	레저놀이 스포츠 사고	게임 중독 및 사이버음란물

27

5. 시기별·계절별 안전관리의 선제적 추진

시기별·계절별 피해우려가 높은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분석,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

분류	봄철(3~5월)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겨울철(12~2월)
자연재해	가뭄, 황사	호우, 태풍, 폭염		대설, 폭한
붕괴사고		여름철 붕괴사고		해빙기 붕괴사고
에너지		전력 수급		전력 수급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사고 수학여행 교통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수학여행 교통사고	졸업식 사고
교통안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대설시 교통사고
산불	산불		산불	
생활안전	등산사고 지역축제 사고	식중독 사고 물놀이 사고	등산사고	
전염병	유원지, 여객선, 유도선, 자전거 안전사고			화재 AI 등 가축전염병

28

여름철 안전관리 범정부 TF운영

- 여름철 방학, 행락철 예상되는 대형 안전사고, 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17개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TF운영(7.22~8월말)
 - * 사설캠프 안전, 유도선 및 물놀이 사고, 폭염, 철도 사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등
- 취약지 우선점검(7.29~8.9), 지적사항 이행확인(8.12~8.26) 등 지속적인 점검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원

- 풍수해 관련 재해위험지역, 안행부, 방재청 실·국장 사전 현장점검(6.22~23), 14개 시·도 20개 지역에 대해 38.5억원(특별교부세) 예방적 투자 지원
- 물놀이 사고 예방 특별교부세 10억, 적조* 방제활동 특별교부세 20억 지원
 - * 안행부 장관 경북 포항, 경남 통영, 전남 여수 적조피해 현장방문(8.13~14)

29



< 청소년 수련시설 현장점검(8.9) >



< 경북 포항 적조 피해 현장방문(8.13) >

30

V 각오와 다짐

- 정부대책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
- 국민안전이 국민행복의 기본전제, 지속적·근원적 대책 마련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함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재난관리 3.0

재난관리 협업행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안전행정부

I. 재난관리 협업행정 추진 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대규모 복합재난 증가로 재난관리에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업 필요성 증대
 - 사전에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기관간 혼선, 책임회피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사전협력체계 구축과 기능의 협업이 필요
 - ※ 대규모 정전('11.9.15.), 불산가스누출('12. 9.27.), 안성(주)코리아냉장화재('13.5.3.) 등
- ☐ 특히, 사회적·인적재난 특성상 유관기관의 협업행정기반이 필요하나 상호협력체계 미비
 - 현행 매뉴얼 운영체계는 재난유형별 개별기관별 역할 위주(종적)로 작성되어 기능별 범정부적 상호협력체계(횡적)는 미흡
 - 협업행정의 현장작동을 위한 상시대비 활동 활성화 필요
- ☐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전대비 및 긴급지원기능 미흡
 - 상황관리의 핵심은 평상시 사전대비, 상황발생 시 긴급조치 업무가 필요하나, 대부분 즉석 업무분장으로 긴급지원조치 기능 미흡
- ☐ 장비, 자재, 인적자원 등 재난관리자원을 개별 관리하고 있어 공동활용체계 및 원활한 수습활동 곤란
 - 범정부차원의 재난관리자원 협업체계 구축·활용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 순환보직, 재난경험부족으로 업무연속성, 노하우 등 전문성 부족
 - 협업행정 기능 보강으로 재난관리 역량 제고 필요

⇒ 적극적 재난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저감과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등 “재난관리 3.0” 수준의 상시적 협업행정 강화 필요

2. 추진방침

- 적극적 재난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및 부처 칸막이 제거
 - 기관간 협업기능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점 발굴 및 범정부차원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재난관리자원 활용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방안 연계 추진
 - 중앙 및 지자체, 민간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 마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 수행
 - 재난발생시 기능별 상호협업체계 가동으로 피해 최소화
- 재난유형에 관계없이 공통·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기능 위주로 협력체계 구축
 - 13개 기능별 주관기관 지정 및 SOP 마련,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우리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 현행 매뉴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을 통해 재난 사각지대 해소

《 근거 법령 》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을 총괄 조정(정부조직법)

제34조(안전행정부) ① 안전행정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역할 수행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관련(재난법 개정법률안)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

②,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통보, 확인·점검, 시정요청을 할 수 있음

3. 재난관리 협업기능별 주요내용

※ 세부 내용(붙임1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상황관리 총괄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조정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④ 긴급통신지원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 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⑤ 시설 응급복구	피해시설 응급복구
⑥ 에너지 기능 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⑦ 재난수습 홍보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⑨ 교통대책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⑩ 의료·방역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⑪ 자원봉사관리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⑫ 사회질서유지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⑬ 수색, 구조·구급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4. 상호협력체계 구축

- 재난유형에 관계없이 공통·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협업기능(13) 상호협력체계를 기능별 주관부처에서 책임지고 추진

※ 현행 매뉴얼 체계는 재난 유형별 개별기관별 역할위주로 작성되어, 기능별 범정부적 상호협력체계는 미흡

-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공통 필수 기능(붙임 4) 위주로 횡적·종적 협력체계 구축

- 사전 조정된 지휘통제 프로세스의 정립, 재난상황정보의 공유체계 마련, 공동 대응계획 수립 등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대한 표준행동 절차(SOP) 마련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품목선정 및 코드화, 운영관리기준안·지침 마련,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평가기준 마련(방재청에서 용역 중)

- 상호협력과 조정을 위한 상시 공동대응 훈련 실시

- (1단계) 안행부·방재청·소관 중앙부처합동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협업기능별 주관기관 지정 및 역할 배분

- (2단계) 기능별 주관부처 책임운영제 실시

-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진계획 및 상황 점검

- 과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관계부처 합동)

< 활용 방안 >

▶ 13개 공통기능별 협업기능을 구축하고, 평시훈련을 통해 상시재난대비 태세 구축

▶ 재난발생 시에는 자연재난, 사회적·인적 재난에 13개 기능별 협업 대응

- 자연재난은 중대본 상황관리 매뉴얼을 제작, 금년 여름 풍수해 재해대책기간 시범 운영

- 사회적·인적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매뉴얼을 참고하여, 중대본 운영매뉴얼 개편 추진, 중대본 비상대응 시 활용

5. 재난관리 협업행정 추진절차

① 공감대 형성

- 담당자(안행부, 방재청, 재난안전연구원) 지정 및 사전교육
 - ※ 담당자 역할 : 재난관리 협업행정의 취지 및 기능별 주요임무 숙지 / 기능별 협업 사례(국내, 해외) 분석, 협의회 운영, SOP 작성, 숙달훈련 등 주관기관 지원
- 재난관리 협업행정 실무협의회(9.13, 중앙행정기관 재난담당과장, 담당), 워크숍 실시(9월말, 지자체, CSO 등)

② 실무협의회(또는 TF) 구성·운영

- 13개 기능별 주관기관 지정 및 역할 배분
- 재난사례(국내, 해외) 분석
- 개괄적 업무범위 및 기관별 역할 결정

③ SOP 작성

- 분야별 표준·실무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각 기능별 임무 작성
- 목적, 범위,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단계별 참여기관 역할과 책임)
- 기능별 참여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실시
- 대비단계(계획, 교육·훈련, 평가), 대응(초동대응, 2차 대응), 복구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SOP(협업행정 운영절차서) 작성

④ 숙달훈련 실시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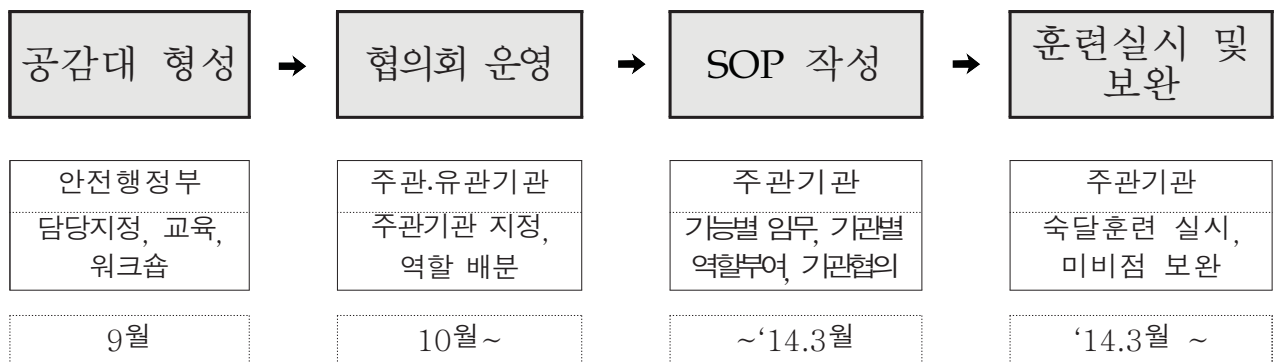
- 현행 매뉴얼 숙달훈련과 연계한 기능별 재난대응 숙달훈련을 통해 문제점 보완 및 우리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협업체계 구축

※ 표준행동절차(SOP) 구축의 의미

- SOP는 공통작전개념에 기반한 재난대응의 시간적 흐름(대비-초동대응-2차대응-사후관리)에 따라 각 기관의 역할수행을 정의하고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핵심
- 즉 재난관련기관이 재난에 대응한 일련의 상호협력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체계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임
- 국가개입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관기관·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것은 기존의 재난유형별 매뉴얼과 유사
- 그러나 재난유형(24)별 공통매뉴얼은 재난유형 주관기관의 종적 대응활동 내용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운영시 협력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SOP는 공통작전개념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횡적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
-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운영과, 효율적 자원 분배 등을 위해서는 주관기관과 유관기관이 반드시 사전 합의에 의한 기존 매뉴얼을 개선한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를 만들고, 상호협력 가동을 위한 상시훈련 필요

6. 향후계획

- 협업행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 실시(CSO 워크숍과 병행 실시)
 - 일 정 : 9월말
 - 대 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사·공단 CSO(안전책임관)
 - 내 용
 - 재난관리협업행정 추진방안 및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설명, 협업사례 발표, 재난관리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질의응답 등
- 협업행정 추진 협의회(또는 TF) 기능별 수시 운영
 - 주관기관 지정, 기관별 임무 역할 배분, SOP 작성, 훈련실시 등
- 추진 일정



[붙임 1]

재난관리 공통필수기능(13개)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상황관리 총괄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조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결과 보고·전파 -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 학교휴업, 도로·공항·선박 통제, 예찰 등 권고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②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 긴급생활안정지원체계 구축 및 가동준비 -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확인 및 시행준비 -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긴급지원 준비 - 재해구호물자 응원 등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 확인 -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지출 준비 - 피해지원 정책 종합홍보 사전준비 -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 국세 납기연장 - 지방세 등 감면 및 기한연장 - 재해복구 용자 지원(주택·농업·어업·산림) - 재해복구 용자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 - 전기요금 감면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지정 - 과거사례를 참고하여 재난폐기물 발생량 추정 - 대규모 재난폐기물 대비 장비동원체계 점검
④긴급통신지원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재난발생시 통신시설 침수·파손 등 통신두절 대비 -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기관별 비상연락방 정비 -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 전용회선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두절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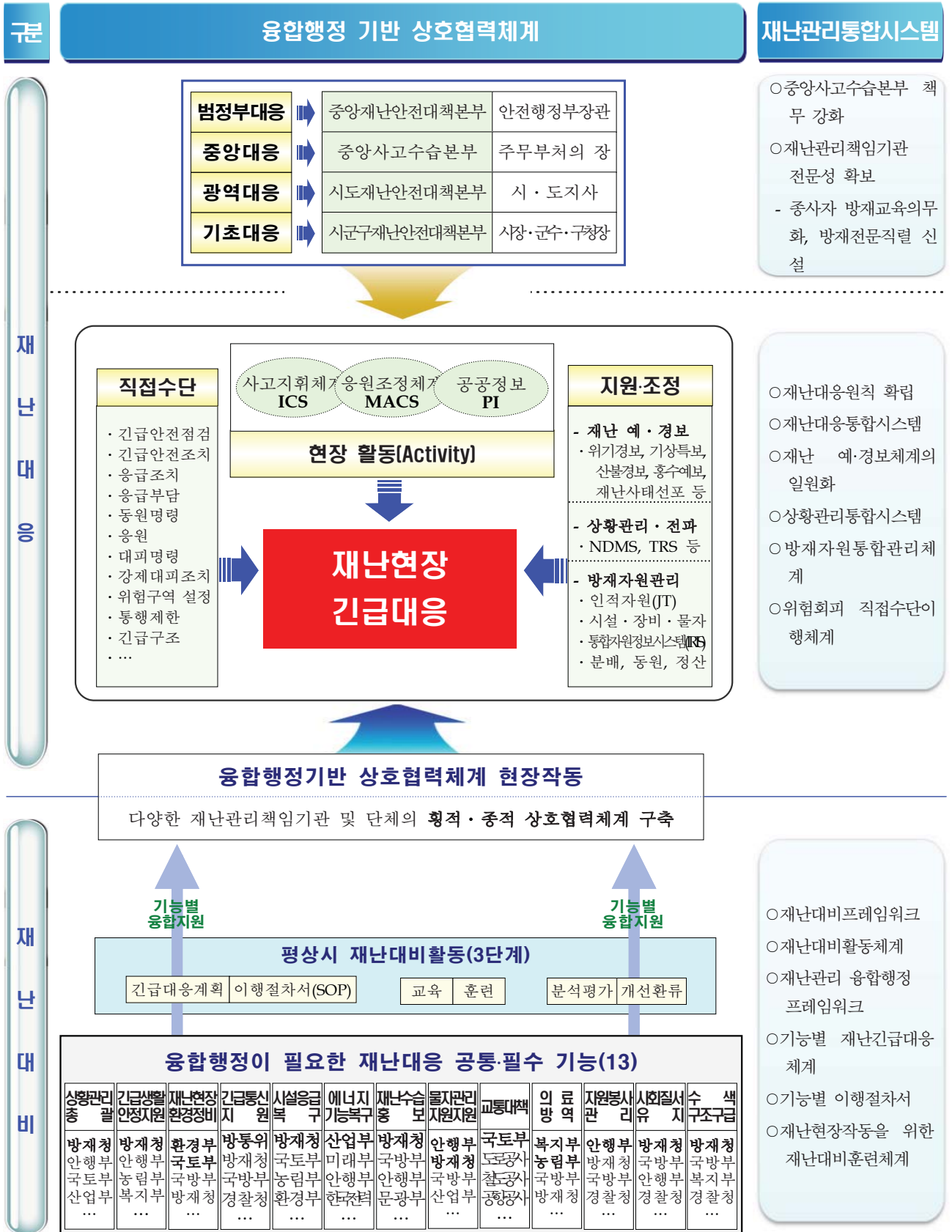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⑤시설 응급복구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 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 재난발생 즉시 동원 가능토록 관련기관에 준비지시 - 피해 극심지역 부족장비 파악, 광역지원체계 운영 - 재난피해 대비 특별지시 및 계도
⑥ 에너지 기능 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 에너지 기능 고장으로 인한 피해 예측 -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 점검 - 대규모 에너지 시설물 피해대비 응급복구체계 점검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준비 -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
⑦재난수습 홍보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재난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위성중계차량 재난피해 예상지역 파견
⑧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① 평시 -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 재난특성에 맞는 방재자재 비축 조치 - 상호협력기능 별로 필수장비 확보 - 장비동원 준비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사전 협약 ② 재난 발생시 -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유지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 대규모 재난 시 민방위대, 군경 동원 등

구 분	주 요 내 용
⑨교통대책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체계 가동 -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인력·장비 동원태세 점검 - (도로) 낙석발생, 붕괴우려 급경사지, 침수우려 도로 점검,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간판 등 통제장비 점검 - (철도) 지하철 방화시설 및 수방자재 등 사전점검 - (해상) 항해선박 피항유도 및 안전운행 계도 - (항공) 공항별 비상근무체계유지 및 운항통제
⑩의료·방역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 (의료)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망 점검, 응급 의료 물자 비축현황 관리, 전염병 예방교육 및 감시체계 운영 - (방역) 방역물자 비축현황 및 방역요원 비상연락망 정비
⑪자원봉사관리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상황체제 점검 - 자원봉사자 인력활용 준비·점검 -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인력점검 -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네트워크 현황 점검
⑫사회질서유지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⑬수색, 구조·구급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 긴급구조 통제단(소방, 119) 운영 -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 고립지역, 침수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계획수립

재난관리 공통필수기능(13개)별 담당자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담 당 자			
		안 행 부		방재청	재난안전연 구원
		정	부		
① 상황관리 총괄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자원조정	인적재난과 5급 박현웅	인적재난과 6급 이희재	방재대책과 5급 최병진	안전연구실 김윤희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자통신료 감면	재난총괄과 5급 김호석	재난총괄과 8급 정보근	복구지원과 5급 박종빈	안전연구실 김혜원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인적재난과 5급 박현웅	인적재난과 6급 이희재		안전연구실 유병태
④ 긴급통신 지원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 기관간 정보통신 체계 운영	사회적재난과 5급 김형호	사회적재난과 7급 심우상	정보화담당관 5급 신현동	재난정보실 신건식
⑤ 시설응급 복구	파해시설 응급복구	인적재난과 5급 윤의석	인적재난과 6급 고수웅	기후변화대응과 5급 한상만	안전연구실 정재학
⑥ 에너지기능 복구	가스전자유류 등 파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사회적재난과 5급 정재환	사회적재난과 6급 김형환		안전연구실 박소순
⑦ 재난수습 홍보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인적재난과 5급 이재한	인적재난과 6급 조희숙	대변인실 5급 박경련	연구기획과 김현정
⑧ 물자관리 및 자원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사회적재난과 5급 임병철	사회적재난과 6급 이재실	재난대비과 6급 문정호	안전연구실 박상현
⑨ 교통대책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인적재난과 4급 최정례	인적재난과 5급 김성주		안전연구실 신진동
⑩ 의료·방역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 역서비스	사회적재난과 5급 임병철	사회적재난과 6급 이재실		안전연구실 김대곤
⑪ 자원봉사 관리	재난지역 배치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사회적재난과 4급 유재명	사회적재난과 5급 이종윤		안전연구실 오금호
⑫ 사회질서 유지	교통통제, 헌장통제, 안전관 리, 주민대피	인적재난과 5급 윤의석	인적재난과 6급 고수웅		안전연구실 박진희
⑬ 수색, 구조구급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 송, 사망실종자 수색	인적재난과 5급 이재한	인적재난과 6급 조희숙		안전연구실 정태호

협업행정기반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도해



융합행정기반 상호협력체계 현장작동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횡적·종적 상호협력체계** 구축

재난대비

평상시 재난대비활동(3단계)

긴급대응계획

이행절차서(SOP)

교육

훈련

분석평가

개선환류

○재난대비프레임워크

○재난대비활동체계

○재난관리 융합행정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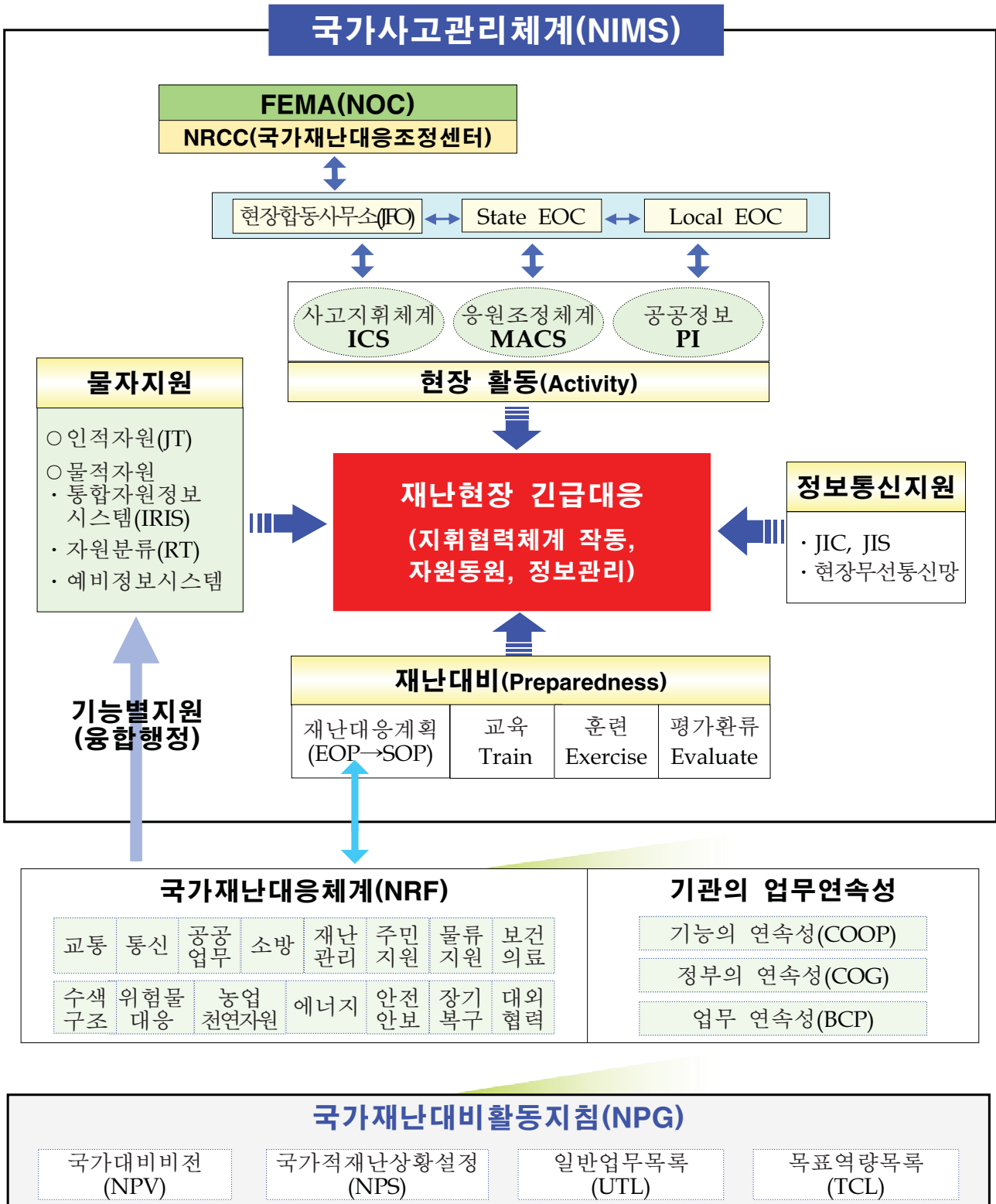
○기능별 재난긴급대응체계

○기능별 이행절차서

○재난현장작동을 위한 재난대비훈련체계

융합행정이 필요한 재난대응 공통 필수 기능(13)

미국의 재난관리(대비) 체계



공통필수기능(13개)별 부처현황[안]

- 55 -

II.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1. 통합지휘소의 필요성

- 재난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역량 그리고 그간 노력의 성과는 전쟁터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결판이 남
- 또한, 재난현장 대응의 성공여부는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에 달려있음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현장지휘·통합대응체계

2. 추진경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통합지휘소 근거* 마련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 작성('13년 상반기)
- 지자체 의견수렴 및 법제처 검토('13.7월~8월)
- 표준조례 확정 및 지자체 배포('13.8.28)

3. 표준조례 소개

□ 조문구성 : 제4장, 24개 조문으로 구성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시기 및 주요 임무와 역할 규정
-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강화(업무연락관 파견 등)
- 상황전파·현장출동·현장조치·긴급복구 단계별 통합대응체계 마련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제4조)
 - 주요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 < 통합지휘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요 재난 > —

- ①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 ②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 ③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 ④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 ⑤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 ⑥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 ⑦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 ⑧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 그 밖의 재난에 대해서는 시·군·구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지휘소 설치 여부 검토
- 통합지휘소의 구성(제5조~제7조)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장 : 시·군·구 부단체장)를 구성
 -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 통합지휘소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현장책임자간 업무연락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합지휘소에 업무연락관을 파견
 - 내부조직(실무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 지원반 등으로 편성
 -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지휘관*을 지정
- * 자연재난 :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담당 실·국장

○ 통합지휘소의 임무(제5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보고 및 언론대응
-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임무조정 및 인력·장비의 동원, 배분
-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제8조~제21조)

단 계	주요 대응절차 및 업무
상황전파 (제8조~제10조)	▶ 통합지휘소의 장은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계획 및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전파 ▶ 통합지휘소의 장은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요청
현장출동 (제11조~제13조)	▶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 요청 ▶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현장조치 (제14조~제18조)	▶ 통합지휘소 설치 위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통보 ▶ 통합지휘소의 장은 인력·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재난현장 통합대응) ▶ 재난현장 통제 요청 및 응급의료 활동 등 지원
긴급복구 (제19조~제21조)	▶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직결되는 도로, 전기, 통신 등을 우선 적으로 복구하는데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 ▶ 긴급복구 인력·장비 부족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지원 요청

○ 복구체계 전환(제22조~제23조)

-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종료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
- 통합지휘소의 장은 항구복구 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 결정

4. 기대효과

○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로 전환

- 지자체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 확립으로 초기 대응능력 강화
-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및 방재장비를 총체적으로 활용 가능
- 재난대응 사각지대 해소 및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

○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시기 명확화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시기 명문화

○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계 구축

- 각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업무연락관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정보공유,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등 수행

○ 소방조직(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휘소 간 효율적인 임무·역할 분담

- 긴급구조통제단 : 초동대응(화재진압·구조·구급·수색·위험물 제거)
- 통합지휘소 : 초기대응(경보발령, 주민대피, 동원명령 등) 및 긴급복구

○ 재난현장 복구단계(긴급복구 ↔ 항구복구)별 주관기관 간 역할 명시

- 통합지휘소 : 도로 및 라이프라인(전기, 가스, 통신) 등 긴급복구
- 시군구 소관부서 : 도로(낙석방지), 하천(제방보강), 침수지 등 항구복구

5. 최근 재난안전 및 안전사고 사례로 본 적용 가능성

□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12.9.27)

○ 현장대응 및 문제점

- (현장대응) 구미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을 설치하여 인명구조 등 초동대응, 본격적인 방재작업은 경북소방본부에서 수행
※ 경북소방본부(긴급구조통제단)는 중앙119구조단과 합동으로 가스누출 밸브 차단 및 제독작업 실시, 안전통제선 재설정 등 수행

- (문 제 점) 유관기관 협조 미흡으로 초동대응에 어려움

○ 통합지휘소 설치 여부 및 설치시 기대효과

- (설치여부) 유해물질 유출시, 다수 현장근로자(5명) 사망 및 주민피해 확산 등으로 통합지휘소 즉시 설치 필요
- (기대효과) i)현장중심 대응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및 전파 가능, ii)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초동대응 가능, iii)주민대피 등 신속한 후속 조치로 주민피해 확산방지

□ 노량진 수몰사고('13.7.15)

○ 현장대응 및 문제점

- (현장대응) 동작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을 설치하여 수몰자 구조 등 사고초기 대응, 본격적인 수몰자 수색 활동은 서울소방본부에서 수행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공사는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서울소방본부(긴급구조통제단)의 수몰자 수색업무 등 지원(물막이 및 배수작업)

- (문 제 점) 서울소방본부가 수몰자 수색업무를 총괄·지휘하였고 현장대응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

○ 통합지휘소 설치 여부

- 수몰사고가 서울시 관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현장대응 기관인 서울소방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모두 서울시 소속 이므로 시군구 단위(동작구청)에서 통합지휘소 설치 불필요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통합지휘소는 시·군·구 단위 에서 설치하도록 규정
- ◇ 다만, 시도 단위로 확대 설치여부는 시군구 단위의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결정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13.7.30)

○ 현장대응 및 문제점

- (현장대응) 강서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을 설치 하여 매몰자 구조 및 이송 등을 통해 구조·구급 활동 수행
 - ※ 서울소방본부는 방화대표 상판 붕괴사고가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 사고로 처리됨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구조대 등 지원
- (문 제 점) 강서소방서가 매몰자 구조작업을 총괄·지휘하였고 현장대응체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 통합지휘소 설치 여부

-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는 단순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합 지휘소 설치 불필요
 - ※ 표준조례 :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시 통합지휘소 설치

□ 태안군 청소년 캠프 수난사고('13.7.18)

○ 현장대응 및 문제점

- (현장대응) 서산소방서 및 태안해경에서 인명구조 등 초동대응,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작업은 충남소방본부, 해양경찰, 군부대에서 구역별로 수행

- (문 제 점)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미흡, 외부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

* 외부 동원인력(739명) : 태안군 80명, 국립공원 30명, 의소대 440명 민간단체 67명 등

○ 통합지휘소 설치 여부 및 설치시 기대효과

- (설치여부) 태안사고는 5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안전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합지휘소 즉시 설치 필요

- (기대효과) i)통합지휘소를 통해 유관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가능, ii)자원봉사자 등 외부 투입인력 관리 및 지원체계 단일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작업 가능

6.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오니, 각 재난 관리주관기관에서는 소관 재난관리에 적극 활용

○ 지자체에서 통합지휘소 설치시, 관련기관에서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업무연락관 파견, 인력·장비 지원 등 적극 협조

○ 「재난유형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참고4)」는 주요 재난발생시 적극 활용하고, 각종 매뉴얼에도 반영

참고1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관련 주요 재난유형

연번	재난유형	통합지휘소 설치 여부	비고	연번	재난유형	통합지휘소 설치 여부	비고
1	풍수해	○	자연 재난 (9개)	26	접경지역 사고 (유해화학물질)	○	인적 재난 (26개)
2	지진	○		27	정부중요시설	○	
3	조수	△		28	해양선박 사고	○	
4	낙뢰	△		29	화재	○	
5	가뭄	○		30	위험물사고	○	
6	황사	○		31	유도선사고(내수면)	○	
7	적조	○		32	유도선사고(해수면)	○	
8	녹조	○		33	수난사고(내수면)	○	
9	산사태	○		34	수난사고(해수면)	○	
10	산불	○ * 산림보호법 적용	인적 재난 (26개)	35	저수지 붕괴	○	사회적 재난 (15개)
1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36	가축질병	○	
12	대규모 환경오염 (수질)	○		37	감염병	○	
13	대규모 환경오염 (해양)	○		38	정보통신	○	
14	공동구 재난	△		39	금융전산	○	
15	댐붕괴	○		40	원전안전	○	
16	지하철대형화재사고	○		41	전력	△	
17	고속철도대형사고	○		42	원유수급	△	
18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		43	보건의료	○	
19	인접국가방사능누출	△		44	식·용수	○	
20	항공기 사고	△		45	육상화물운송	X	
21	문화재 사고	○		46	GPS 전파혼신	X	
22	도로터널	△		47	우주전파 재난	X	
23	접경지역 사고 (댐무단방류, 붕괴)	○		48	항공운송 마비	X	
24	접경지역 사고 (산불)	○		49	항행안전시설장애	X	
25	접경지역 사고 (감염병)	○		50	가스	△	
총 50개 중 ○(36개), △(9개), X(5개)							

※ ○ : 설치 필요, △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설치 결정, X : 설치 불필요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

- 관련규정 : 산림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산림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
 - ※ 산림피해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등의 대형산불은 시·도지사가 지휘
 -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 i)산불유관기관 소집, ii)산불현장대책회의 개최, iii)기관별 임무부여 등을 통해 산불현장에서 유관기관간 통합지휘체계 구축
 - 시·군·구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진화 지휘를 위하여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 통합지휘본부의 임무·역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진화전력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
 -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불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

< 미국 >

- 지역 비상운영센터(Local EOC : Local Emergency Operation Center) 설치·운영
 - 지역 비상운영센터(Local EOC)는 국내 시·군·구재난대책본부와 유사한 조직으로 지방정부(County, City 등)별로 운영하는 상설 조직
 - 주요 임무와 역할은 재난발생시 구난활동 총괄·지휘 및 지방 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업무협력 담당
- 상황지휘본부(ICP : Incident Command Post) 설치 · 운영
 - 상황지휘본부(ICP)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비상설 조직
 - 주요 임무와 역할은 출동기관 간의 재난대응 업무협업 및 역할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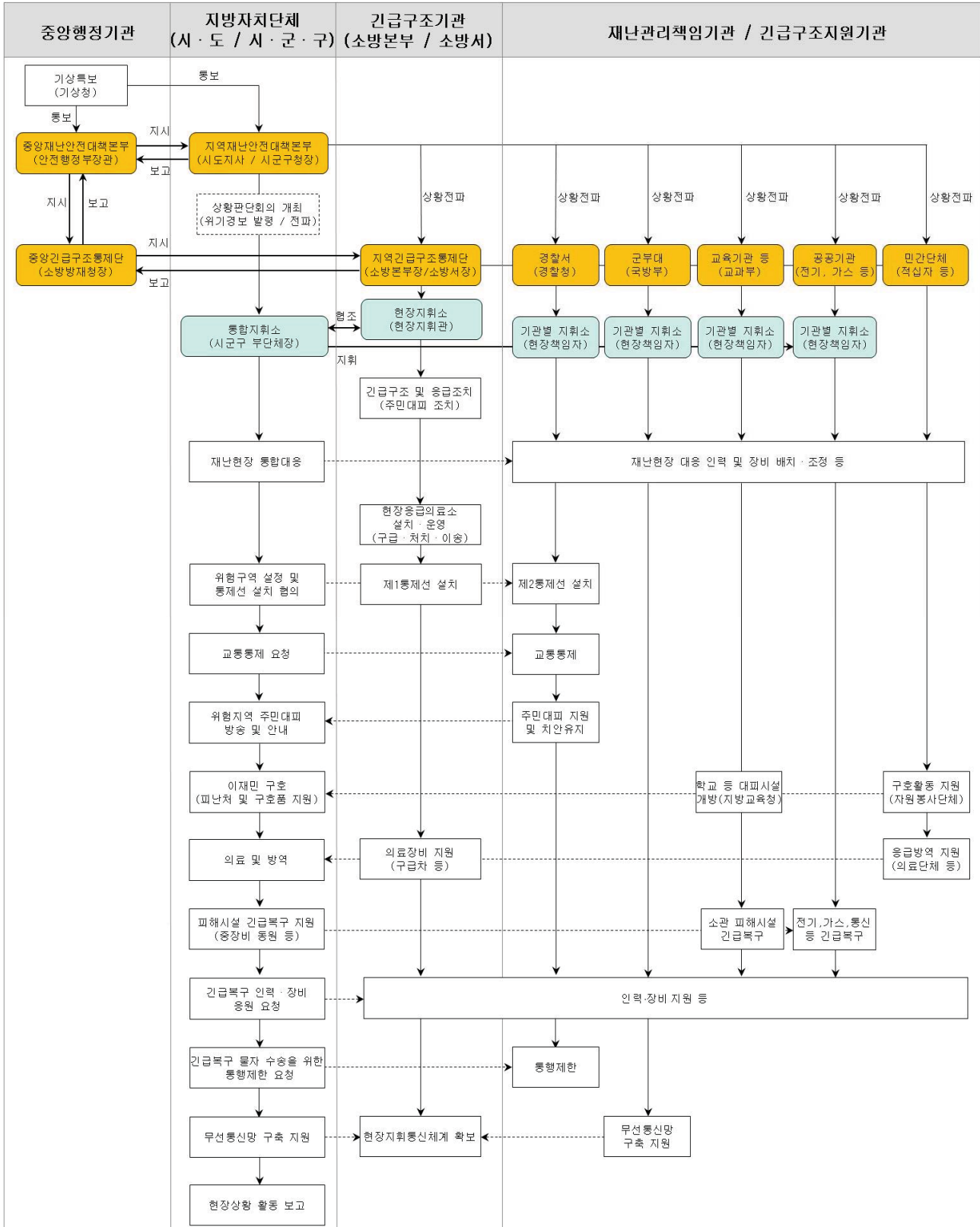
< 일본 >

- 시정촌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
 - 국내 시·군·구재난대책본부와 유사한 ‘시정촌 재해대책본부* (본부장 : 시정촌의 장)’은 비상대책을 총괄·조정하는 비상설 조직
 - * 일본 Hanamaki시의 경우, 재해대책본부 훈령 제정
 - 주요 임무와 역할은 i)재해정보 수집·전파, ii)관할지역 내 현지 작업반 지휘·감독, iii)관계기관 연락·조정, iv)자주방재조직 활용 등
- 현장지휘본부 설치·운영
 - 재해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해 발생시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
 - * 재해대책본부의 하부조직으로 두며, 시정촌별로 명칭은 다를 수 있음
 - 주요 임무와 역할은 재해대책본부와 유사(단, 재난현장에서 임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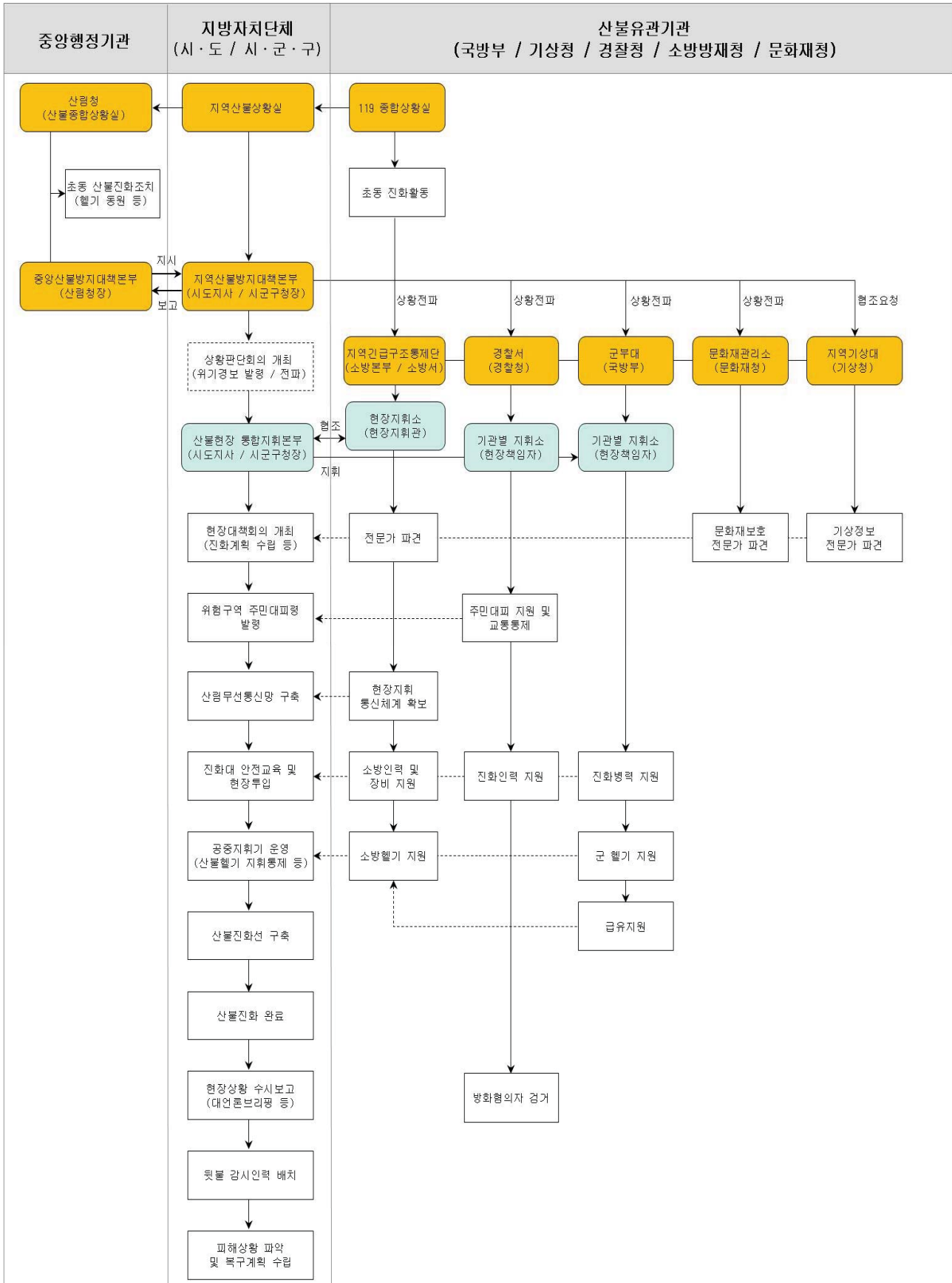
참고4

재난유형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9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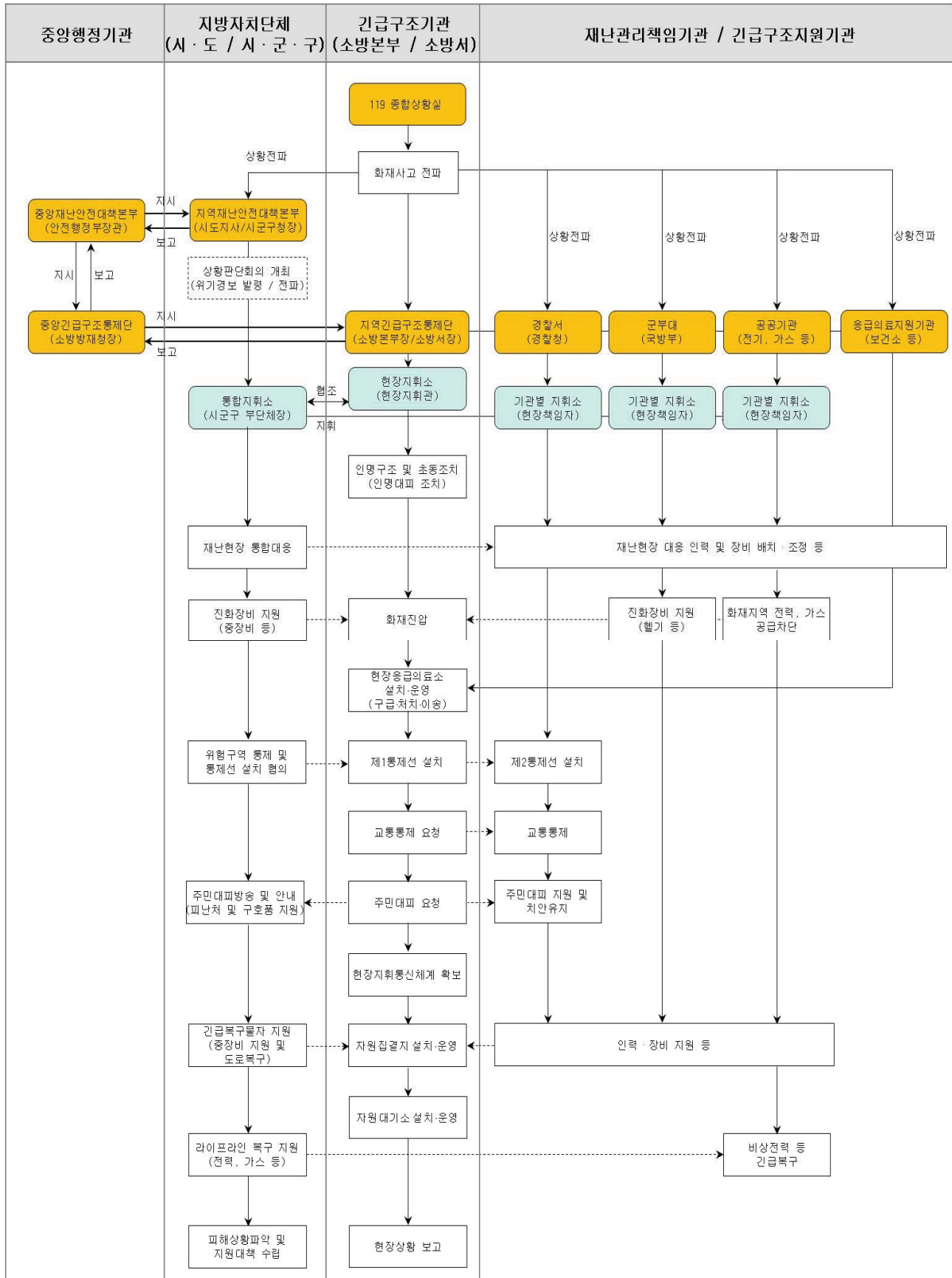
< 풍수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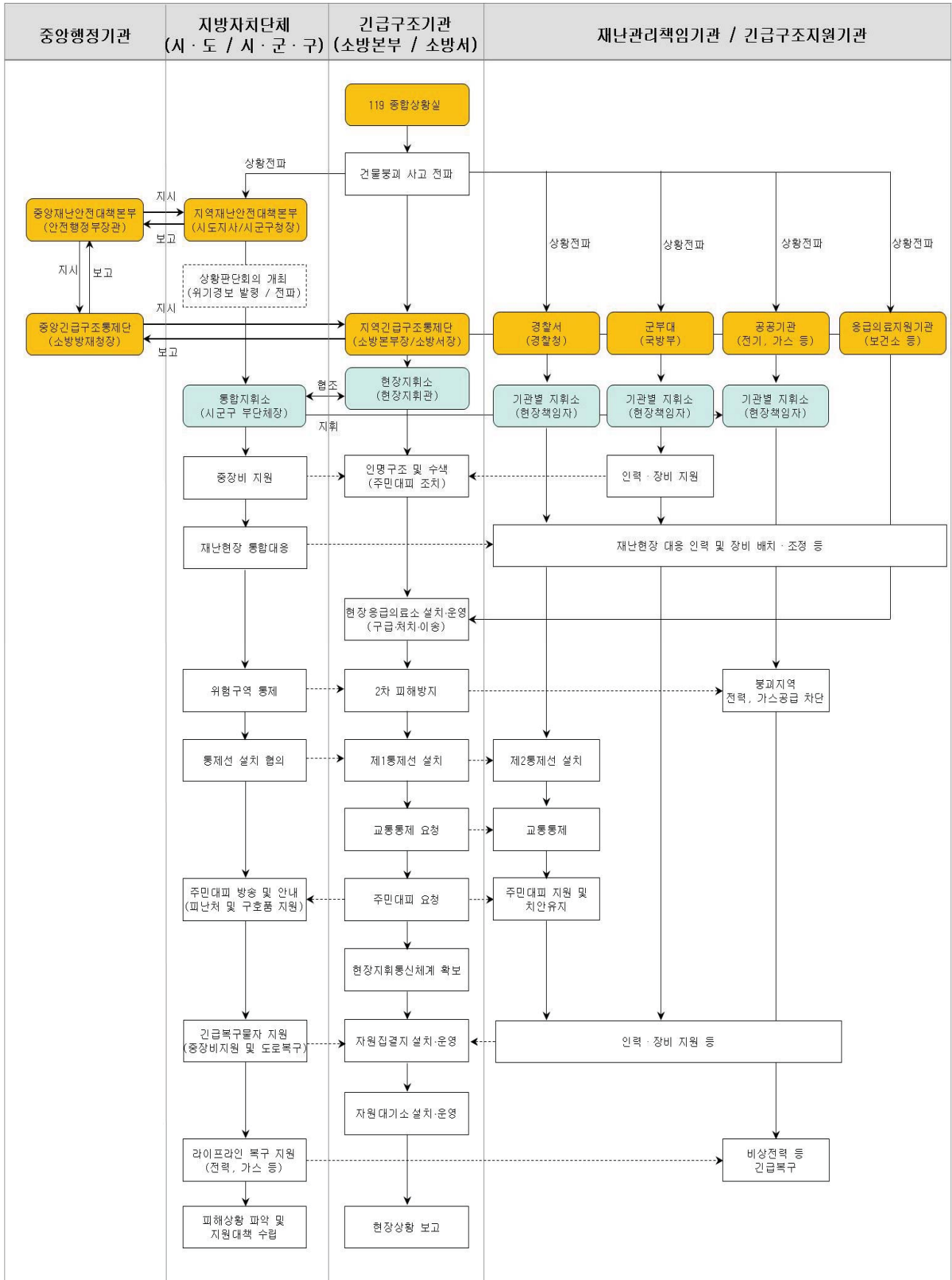
< 산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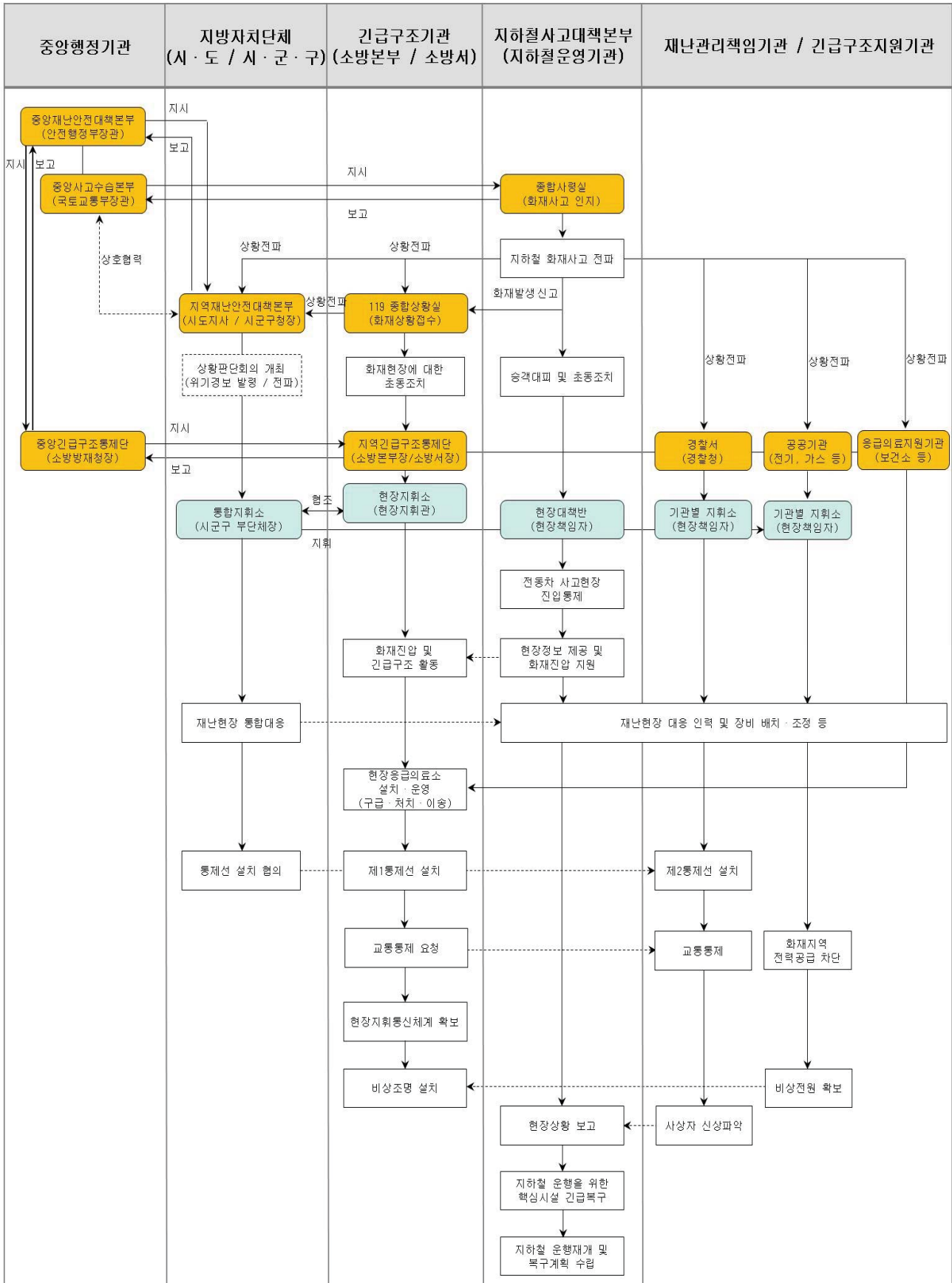
< 대형화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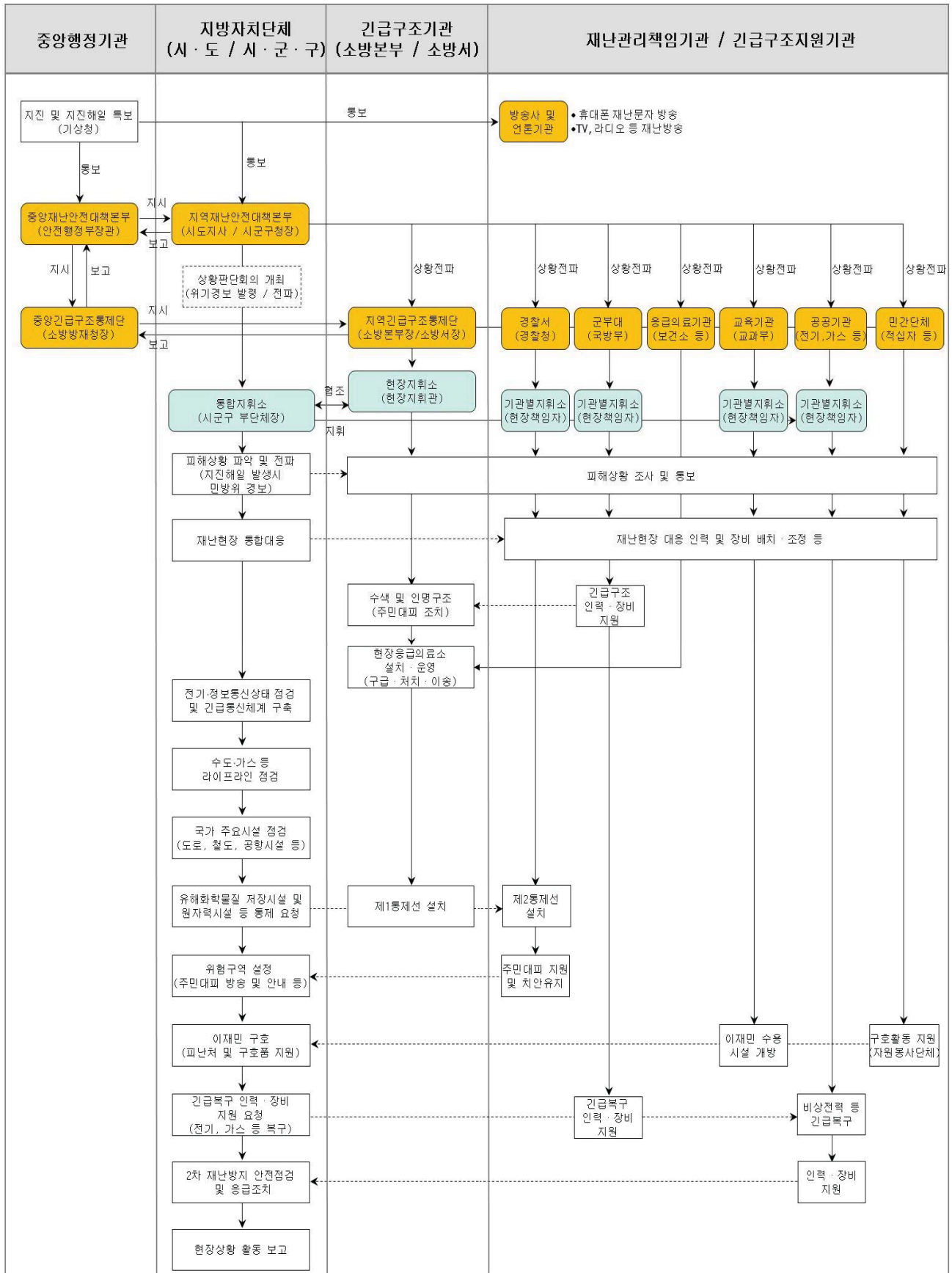
〈 건물붕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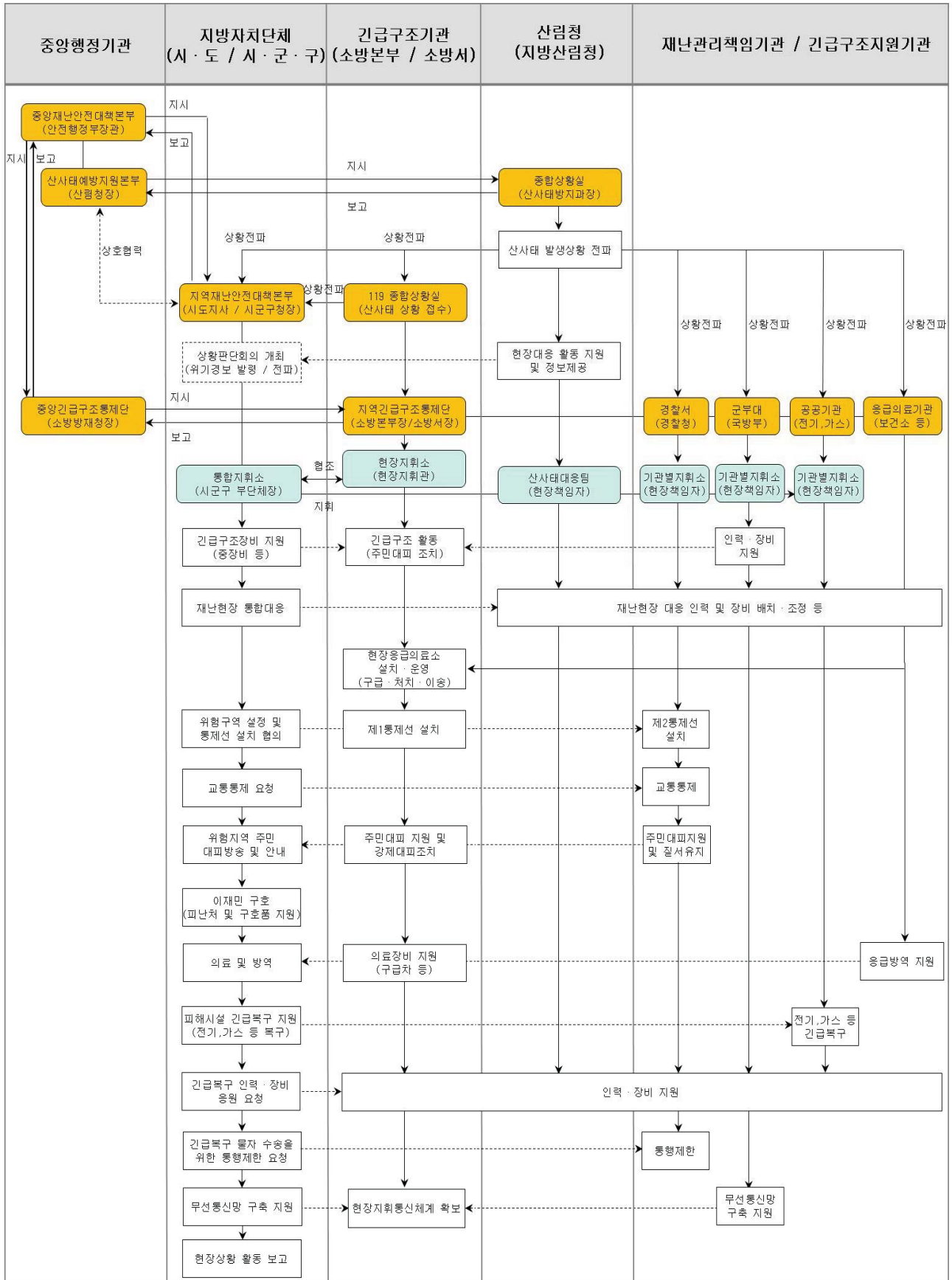
< 지하철화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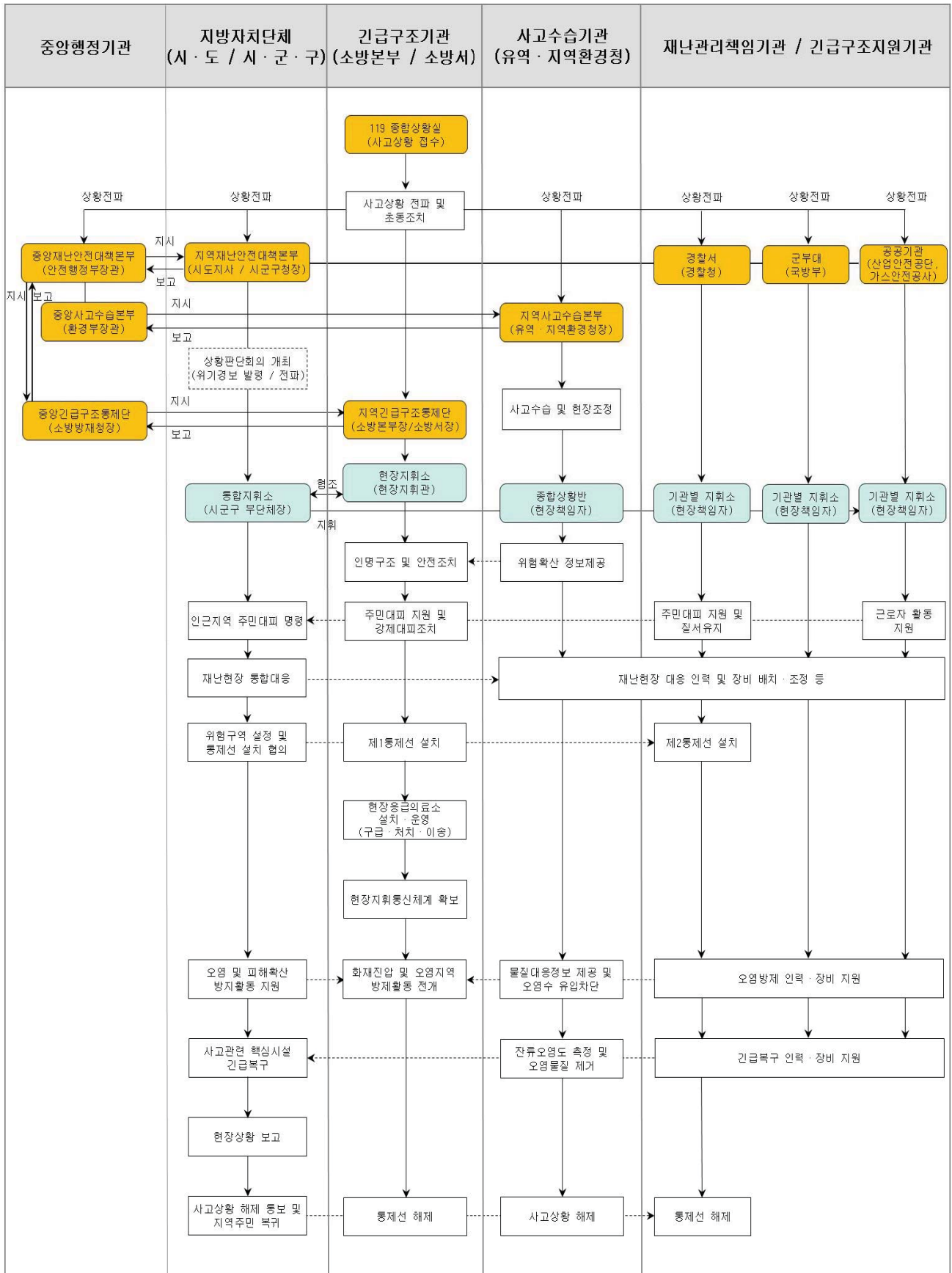
< 지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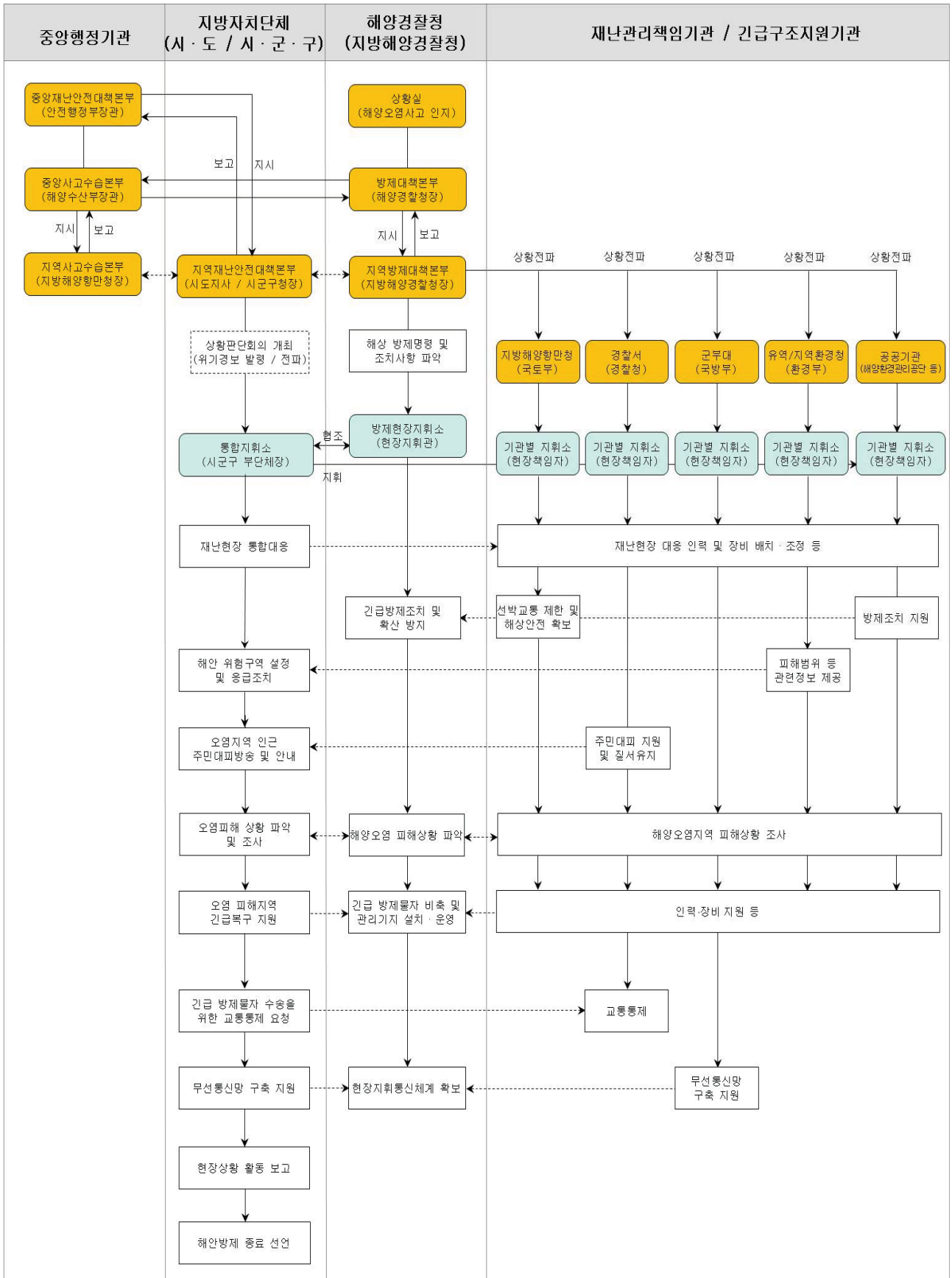
< 산사태 >



〈 유해화학물질 유출 〉



< 해양오염 >



Smart Big Board

2013. 10. 02.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Smart Big Board 아이디어



재난관리 3.0 ← 정부 3.0

국민의 안전 · 행복 증진



재난관리 3.0 [스마트 재난관리]



정부 3.0 [재난안전자료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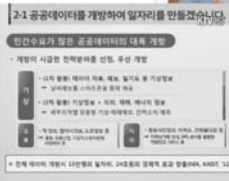
정부 3.0

비전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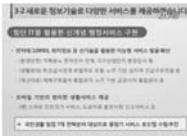
가치 :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정보기술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Smart Big Board 활용예시 [호우]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mart Big Board interface. At the top, it shows the 'Smart Big Board' title and a 'Status Alarm' indicator. The main area features a large map of South Korea with various weather and disaster-related data points. On the left, there is a 'MENU' section with options like '상황보기 (Manual)', '기상정보', '비밀', '기후', 'CCTV', '재난정보', '소식', '112', '119', '112', '119', '112', '119'. On the right, there is a 'Twitter' section displaying recent tweets related to the topic. At the bottom, there is a 'BroadCast' section with a search bar and a 'Broadcast' button. The interface is designed to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and alerts to users.

Smart Big Board 활용예시 [포항 산불]

울집앞 포항산불! 지금 집안까지 케케한 연기가 스며들 정도고 집창문까지 재가 날린다. 동영상 SBS뉴스에 제보했다. <http://t.co/ix0v9l33cB>

포항산불 주위에 연락하고 sns랑 인터넷으로 사진 찾아 봤더니.. 인근지역에서 지원 와야할 정도데.. 진짜 심각하네.. 빨리 인명피해 없이 진화되길..

"@jpppo_oqqq: 이거시 바로 시내에 난 산불 <http://t.co/lTVHZ5gSV0>" 포항 산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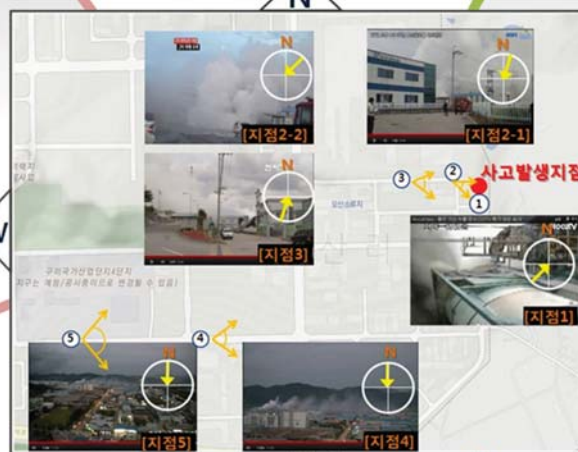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7

Smart Big Board 활용예시 [구미 불산누출]

현장의 CCTV, 국민들이 올린 동영상들 통해 사고현황 파악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유독가스 확산 범위를 분석한 후,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필요



3200만 스마트폰 유저 기반 휴먼센서로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 및 실시간 대응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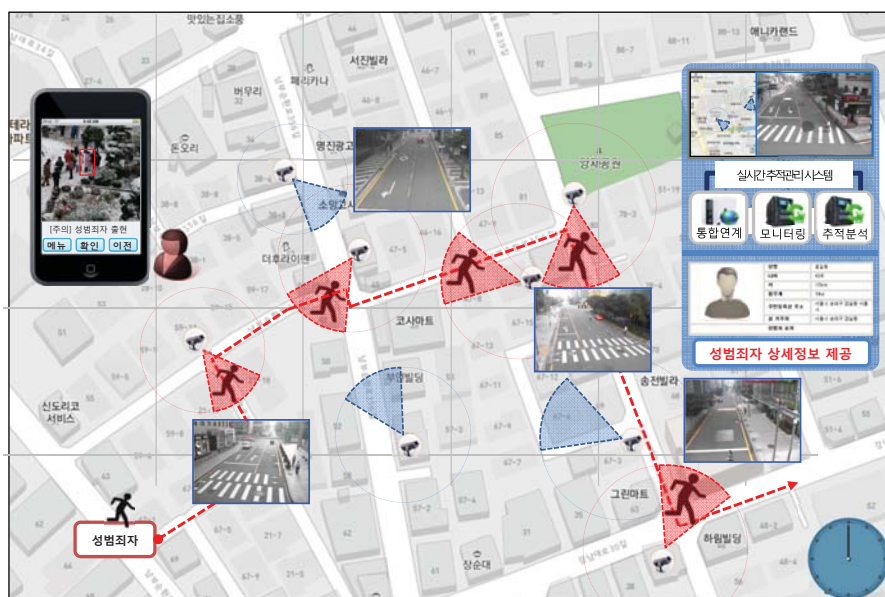
8

Smart Big Board 활용예시 [소셜 빅데이터 감성분석]



향후 Smart Big Board 추가기능 [CCTV 지능형 추적관리체계]

Location based Sensor Enabled Closed-circuit TV



지자체 3.0 Smart Big Board 활용예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11

Smart Big Board 시연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12

2

우수사례

- 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83
(경찰청)
- ②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95
(서울특별시)
- ③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성과와 과제 111
(경기도)
- ④ 화성콜 스마트 택시안심 서비스 119
(화성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경찰청
교통안전과

목차

- ◆ 점검 개요
- ◆ 중점 점검사항
- ◆ 점검 결과
- ◆ 추진 성과
- ◆ 향후 계획
- ◆ 지자체 협조요청사항

점검 개요

- ▶ 기 간 : '13. 7. 29 ~ 8. 23 (4주간)
- ▶ 대 상 : 최근 3년간('10~'12년) 대형사고 발생지 285개소
- ▶ 점검단
 - 지방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교통안전계장·교통조사계장, 교통시설담당, 고속도로순찰대 등 **교통경찰 861명**
 -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국토관리청 등 **177명 합동점검**

중점 점검사항

안전시설

- 급경사구간 추락 방지 시설
- 노후·훼손된 교통 안전표지판
- 신호등 체계·노면 표시 등 교통시설물

도로환경

- 굽은 도로선형, 우거진 가로수 등 운전자시야방해요인
- 도로변 전망대, 교차로 인접 버스정류장 등 급정거 및 급차선변경요인

인적요인

- 신호위반·과속·불법유턴 등 운전자 교통법규위반, 음주운전 등 인적 사고 유발요인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지적사항 유형별				지적사항 없음
	소계	안전시설 불량	도로환경 불량	인적문제 요인	
285(개소)	216	147	19	50	69

- ▶ 점검대상 285개소 전체 점검 완료
 - ✓ 안전시설·도로환경불량 등 지적사항 발굴 216개소
 - ✓ 지적사항 없음 69개소
- ▶ 지적사항 216개 中 개선완료 177개(82%), 미개선 39개(9월 기준)

세부 점검 내용

안전시설 개선 147개소



중앙분리대·가드레일·노면도색 등 시설보완(105개소)



교통안전표지 보완(27개소)



신호등 신설 및 신호·지시체계 개선(12개소)



줄음쉼터·보행자교통섬 설치(3개소)

개선 사례-가드레일 보완(경북 칠곡)



사고 후 가드레일 훼손



2중 가드레일 설치

개선 사례-중앙분리대 개선(서울 구로)



폴리에틸렌 중앙분리대 설치



콘크리트 소재로 교체
노면 재포장 및 차선규제봉 설치

개선 사례-중앙분리봉 설치(전남 완도)



중앙분리시설 없음



중앙분리봉 설치

개선 사례-보행자 교통섬 설치(충북 청주)



횡단보도 위 보행자 위험 노출

보행자 보호 위한 교통섬 설치

개선 사례-신호체계 개선(충남 서산)



차량 통행속도 높으나
비보호좌회전 신호 운영

좌회전 신호 부여

개선 사례-회전교차로 설치(강원 고성)



점멸신호등 운영하는
통행량 적은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환경 개선 19개소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4개소)



가로수 정리(6개소)



가로등 설치(2개소)



차로확장 및 도로선형 개선(6개소)



도로변 전망대 제거(1개소)

개선 사례-버스정류장 이전(대구 동구)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
버스정류장 설치됨



직선도로로 버스정류장
이전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

개선 사례-차로폭 확장(전남 순천)



차로폭 좁은 곡선 도로



차로폭 확장 (2.9m→3.2m)

개선 사례-전망대 제거(강원 고성)



내리막길에 설치된 전망대가 차량 급정거요인으로 작용



전망대 제거 및 긴급제동시설 설치

개선 사례-가로등 설치(전남 무안)



야간 시야 확보 어려워 보행자 사고 다수 발생



가로등 및 주의표지판 설치

개선 사례-잡목 및 잡초 제거(강원 영월)



도로변 잡목·잡초로
운전자 시야 방해



잡목·잡초 제거

인적문제요인 보완 50개소



신호위반·과속 잦은곳 무인카메라 설치(26개소)



순찰·법규위반 단속 강화(18개소)



법규위반 신고유도 현수막 게재·
안전운전교육 등 홍보 전개(6개소)

개선 사례-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강원 고성)



고정식 카메라 설치



구간단속 카메라로 교체

추진 성과

▶ 9월 교통사고 현황

구분	'13. 9월	'12. 9월	대비
발생(건)	17,255	19,234	-1,979(10.3%)
사망(명)	404	486	-82(16.9%)
부상(명)	23,881	29,463	-5,582(18.9%)

▶ 9월 대형버스사고 현황

✓ 전년대비 대형버스사고 발생(23.5%), 사망(37.5%), 부상(39.1%) 모두 감소

▶ 9월 대형사고 현황

✓ 전년대비 대형사고 발생(50%), 사망(100%) 증가, 부상(25%)은 감소

❖ 대형사고: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향후 계획

- ▶ **대형사고 발생지 지속 점검·개선 등 사후관리**
 - 미개선된 지적사항(39개소) 신속 개선 추진
 - 개선 완료한 장소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유지·보수
- ▶ **가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기 간 : '13. 10. 1 ~ 11. 30 (2개월)
 - 대 상 : '13년 상반기 대형사고 발생지(47개소)
 - 중점 점검사항
 - ✓ 대형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분석, 위험요인 사전 제거
 - ✓ 대형버스사고의 차내 가무행위·음주단속 등 교통안전활동과 병행 추진

지자체 협조요청사항

- ▶ **상반기 대형사고 발생지(47개소) 합동 안전점검**
- ▶ **위험요소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 개선 협조**
 - ✓ 최근3년간 대형사고 발생지 중 미개선된 지적사항(39개소) 포함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 Rooting out Crime by Design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 ? ?

디자인이란?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

1. 도시가 아닌, **시민**을 위한 디자인
2. 시설을 넘어, **삶**을 개선하는 디자인
3. 개발의 논리가 아닌,
조화의 논리로 접근하는 디자인
4.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중요 하게 여기는 디자인
5.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디자인

4

시민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
는 디자인

환경

고령화

자살

인권

범죄

골목
상권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회 ·
법원 검찰 경찰

전과 11범 서울 酒暴, 아침부터 술 취해 거리로 나서... 전
자발씨 잔 재 옆동네 주부 성폭행하려다 실패

김철원 기자 ▽ 허자경 기자 ▽

기사

입력 : 2012.08.22 03:03 | 수정 : 2012.08.22 03:03

새벽 음란물 보다 총동 "집
출소 10개월만에 또 범행"



중곡동 주부 성폭행범, 또 다른 성폭행 발각



오피니언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문지마 범죄

데스크왕인 2012.10.03 지면보기 | 21면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무는 성범죄가 사회를 흉흉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이른바 문지마 범죄는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원시적 행태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추석 전 서울 강남의 사립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이어 추석 다음 날에는 경북 칠곡에서 지나가는 여대생이 흉기로 살해되는 등 지금 전국은 불안과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이 아무리 빈틈없는 경계를 강화한 다 해도 이런 문지마 살인과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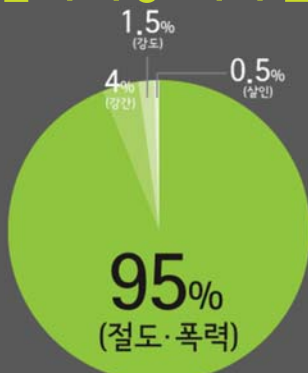


우울증 10대, 초등 교실서 흉기 난동...6명 학생 다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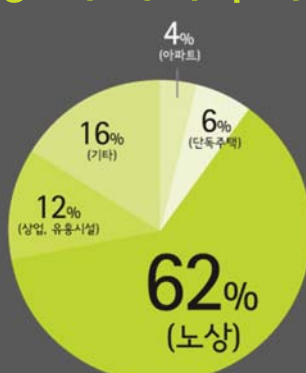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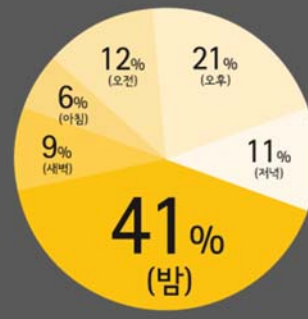
- 공공영역에서의 취약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
-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시 사회적 비용 절감 (연20조)



● 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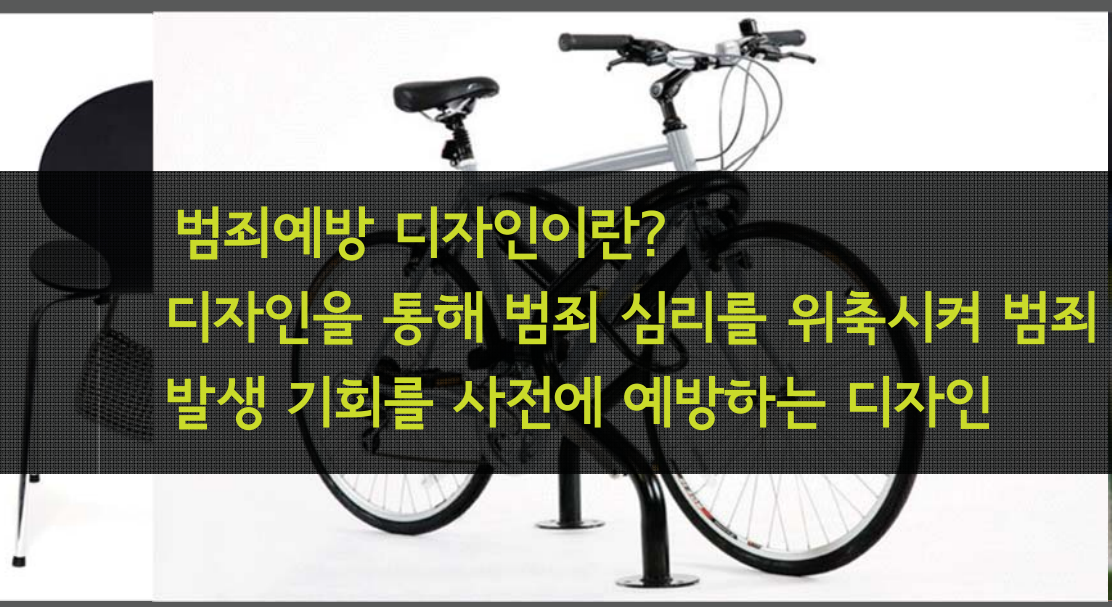


● 장소별 분석



● 시간대별 분석

* '09,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분석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디자인

자전거 도난 방지 외차대

- 추진사례 : 은평뉴타운
- 추진계획 : 마포구 염리동(염리3, 염리4 구역)



은평뉴타운 - 개방형 놀이터



투시형 계단

왜 기성시가지 인가?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현황

247개

(2012.6.30. 기준)



많은비용 장기사업

11

염리동 현황

- 재개발 예정지역으로서 전형적인 달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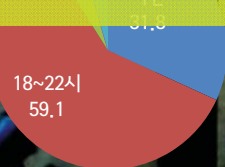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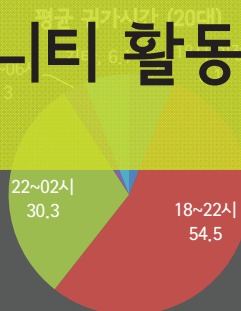
- 좁은 골목, 어두운 조명, 각종 사각지대,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 등
- 외국인과 여성 거주자의 비율이 높으며, 평균 귀가 시간이 늦음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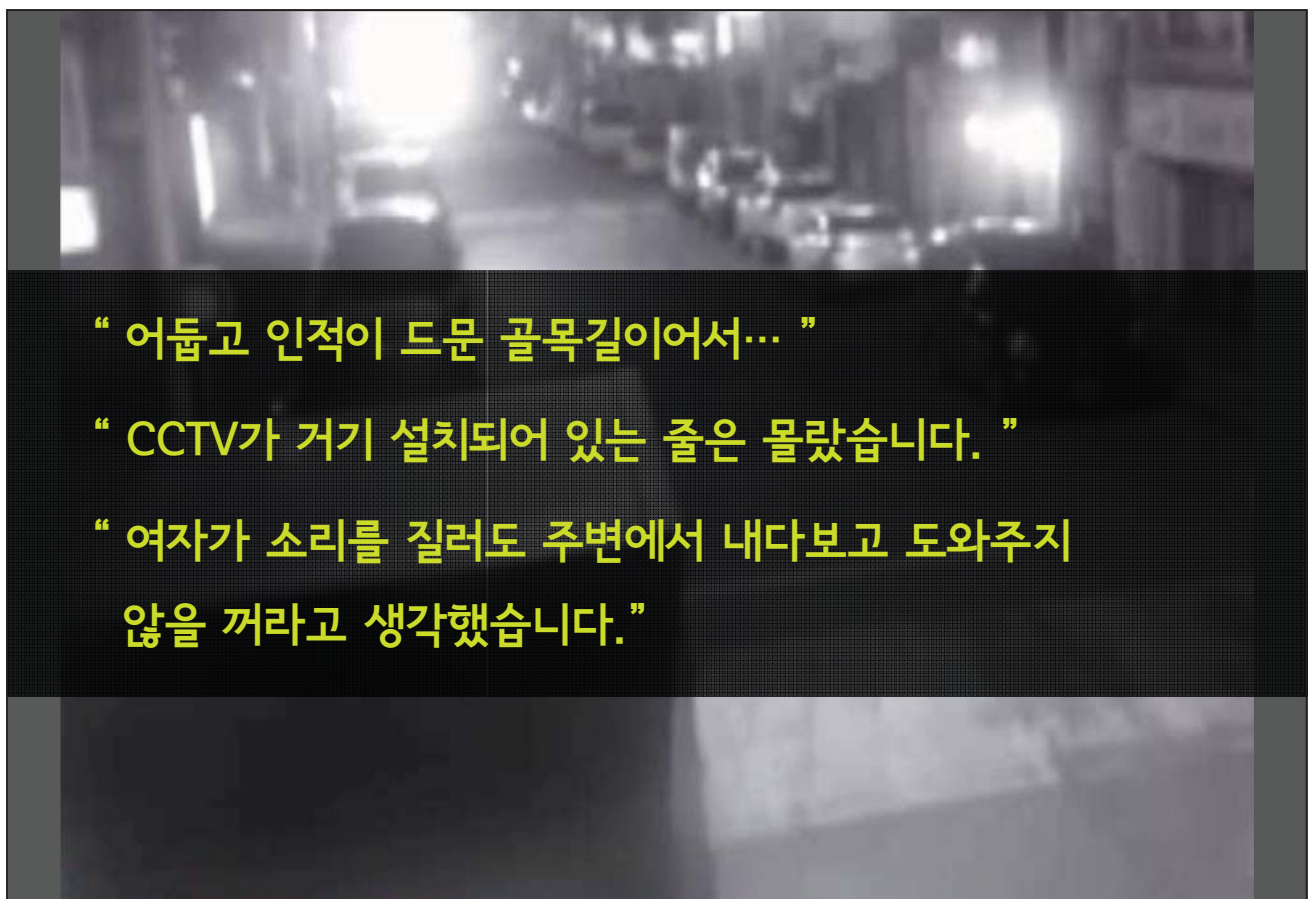
활발한 주민커뮤니티 활동

총 184명 설문

그 중 **184** 명의 여성 주민
설문 결과



12



주민의 목소리

“동네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요.”

“여기 오래 근무했지만 아직 주소가 헛갈려요”

- 용강지구대 관계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멀리 서강대까지 다녀요”

“밤이면 주위에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 급하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저는 일이 끝나면 새벽 두시에요. 오히려 밤에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게 더 무서워요.”

“저녁 이후엔 가급적 집밖에 안 나가요.”

“저희 동네 CCTV와 비상벨은 어디에 있나요.”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하고 싶은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놀이터나 공원이 없다는 점이 아쉽죠. 동네 아이들이 상록아파트 놀이터까지 놀러 가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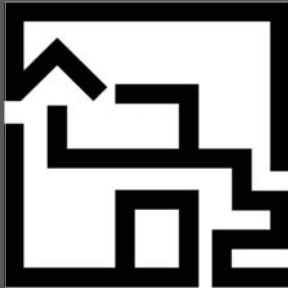
설문조사(222명)
소그룹 인터뷰
공청회 3회(400명)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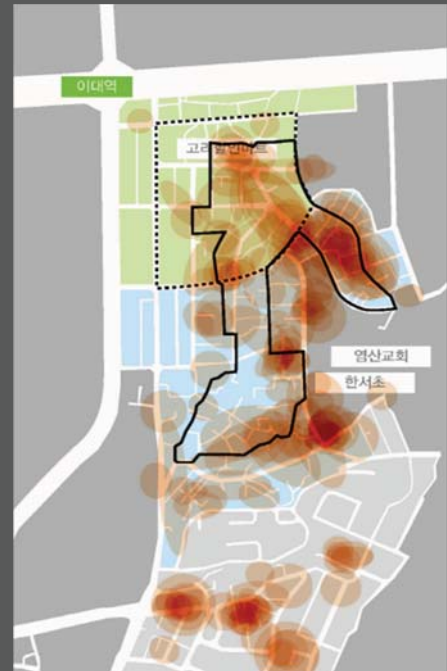
“가장 두려운 길을 가장 즐거운 길로!”

① 주민이 모이게 한다

- 소금길(SALT WAY) 조성



소금길 B.I.



범직 공포지도

17



활차/ 작은 활차(오십견)

하체근육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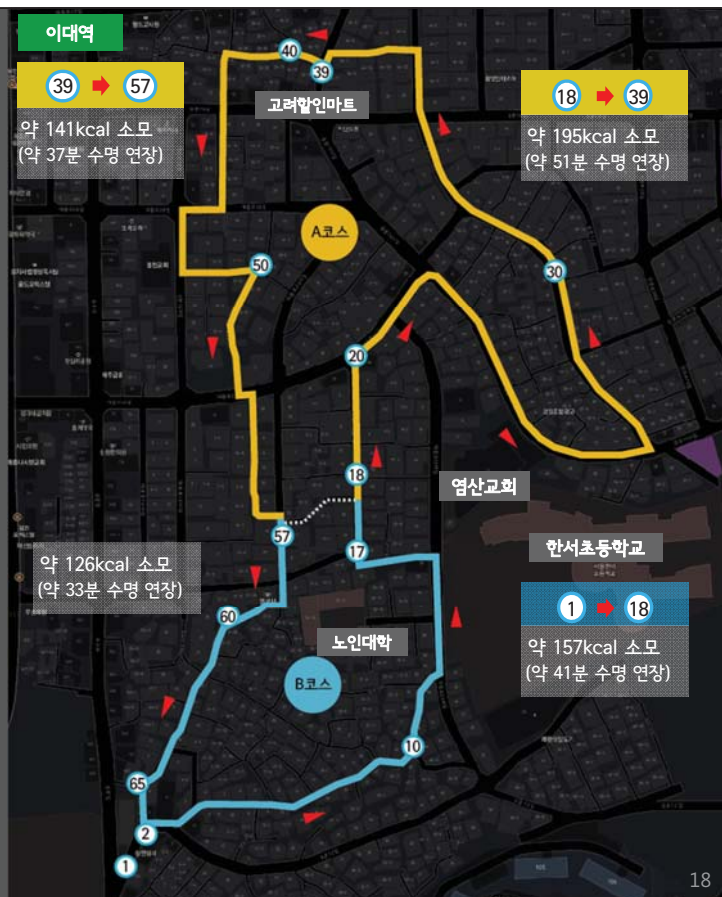
소금길 : 총1.7km 40분
619kcal 소모, 163분 수명연장

A코스

B코스

길이 1.1km
소요시간 약 25분

길이 0.6km
소요시간 약 15분



18

· 소금길 코스 안내 및 Active Design



19

- 소금길 전봇대

- 정확한 위치 인식 사인(69개)
- 방범용 LED 번호 표시등
- 위급 시, 안전 대처 요령



※ 영국 연구결과, 야간 노상범죄 발생 건수의 40%가 5 lux 이하 지역에서 발생, 15 lux 이상 조도에서는 3% 수준

20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높은 시인성 부여!”

21

② 범인이 알게 한다

- 소금길 지킴이집 운영(6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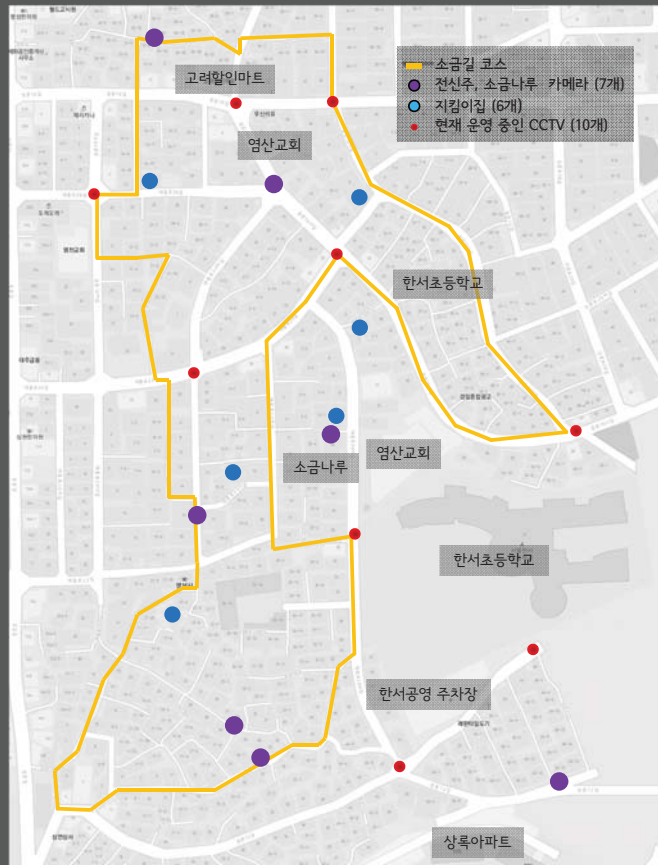
22

- IP카메라 신설(7개)

- CCTV 1/3 가격으로 동일한 효과
- 안내표지판 설치(30개)

- 비상벨 설치(12개)

-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금길 전봇대에 통합설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③ 스스로 이끌어 간다

- 소금나루 조성 :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생활.문화

- 입지. 도서 : 주민센터 북 카페와 연계
- 택배 수취 : 지역민들 부재중 택배 보관
- Salt Cafe : 간이 카페, 음료 판매
- 휴식공간 : 벤치, 평상 등 쉼터 제공

운동.건강

- 운동기구 설치
- 운동 방법 설명
- 운동 기록 카드



안전.방법 24시간 운영

- 자율방범대 초소 : 야간 순찰 체크
- 지역 경비실 초소 : 경비원 상시 상주
- 안전지대 : 긴급대피공간



소금나루 조감도
(염산교회 부지 무상임대)

- 주민공동체 예술 : 골목아뜰리에 2개소 조성(30가구 참여)

• After

“속이 다 시원합니다.”

“부서진 벽이 깨끗해
졌네요..”

“내 집을 내가
보수하고 색을
입히니 애착이
갑니다.”

• Before



- 자율방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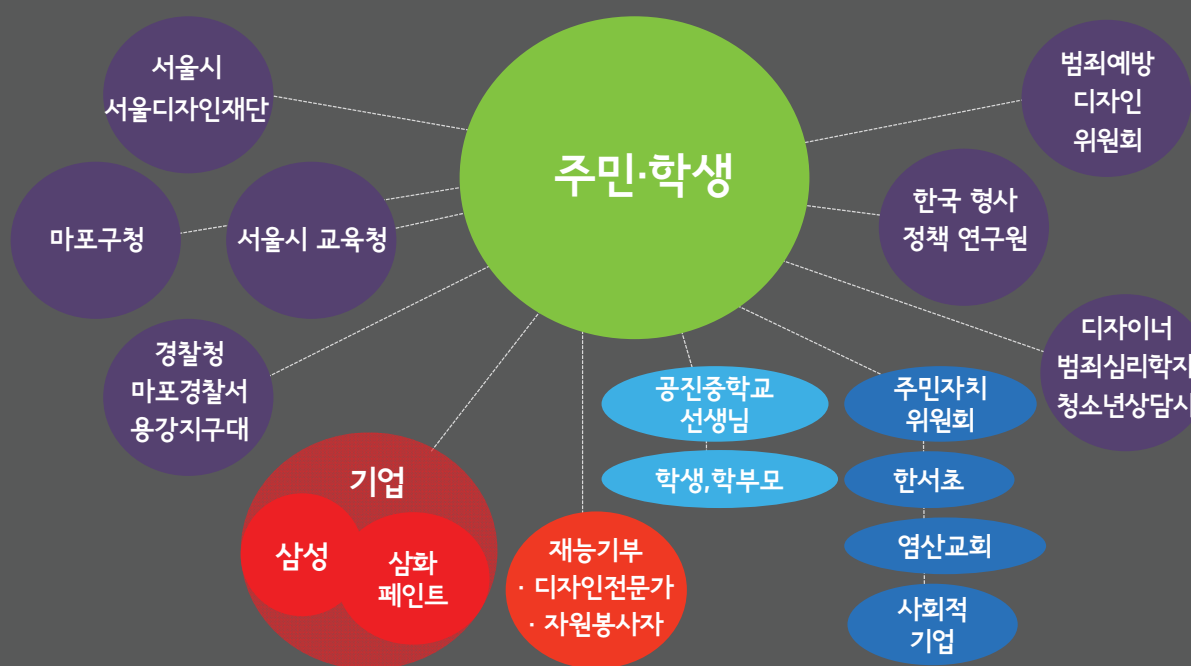
- 주민이 함께하는 자율 방범
 - 한서초 학부모, 염산교회 등
- 도보순찰 강화 (마포 경찰서)

- 소금길 코스
- 전신주, 소금나루 카메라
- 지킴이집
- 현재 운영 중인 CCTV



추진과정

서울시의 고민, 주민과 함께 답을 찾다!



범죄 예방 디자인 효과 및 비전

커뮤니티 활성화 ➡ 자연적 감시 증진 ➡ 범죄 두려움 감소 ➡ 범죄 예방

주민

소금길 : 건강 + 문화 + 커뮤니티

주민자치연대

솔트카페
어린이도서관

자율방범

녹색어머니회
염산교회

안전가옥

주민 참여
IP카메라, CCTV

주민센터

마포구청

용강지구대

협조를 통한 유지 관리 체계 구축

학생

소통

Dream Wall

발산

Dream Stage
Dream Ground

정서

복도 갤러리
심리치료

공진중학교

백석대학교

서울교육청

협조를 통한 유지 관리 체계 구축

앞으로

'13년

평가, 환류

- 상반기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 평가 후 보완
- 마을 공동체 지원

신규사업추진

- 지역1, 공원3 / 학교1(컨설팅)
- 범죄예방 연구소 설치(디자인재단)

중장기

MOU 체결

- 서울디자인재단 + 영국(DAC) +호주(DOC)

정보공유 공동연구

- 공동적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 확산 보급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성과와 과제

경 기 도 (특별사법경찰단)

목 차

- I. 일반현황
- II. 기본 추진방향
- III. 그동안의 성과
- IV. 2013년 주요 수사사례
- V. 주요 과제

I. 일반현황

● 설 치 : 2009. 3. 24.

● 조 직 : 1단, 7팀, 11개 수사센터(23개반)

※ 법무부 법률자문 부장검사 파견

● 인 력 : 92명(도 25, 시군 파견 67)

● 직무분야(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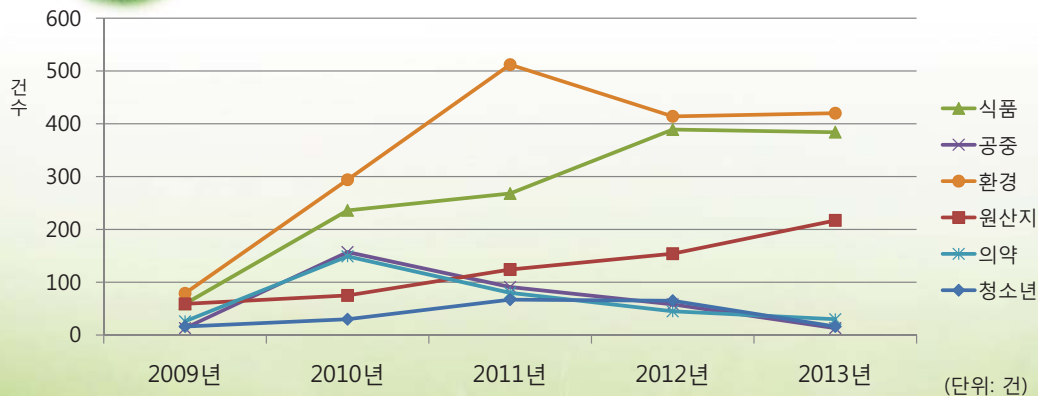
- 식품, 공중, 환경, 의약,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II. 기본 추진방향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 전개

- ✓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
- ✓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수사로 소비자 신뢰 제고
- ✓ 생활환경 저해사범 근절로 쾌적한 주거 조성
- ✓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주변 유해요인 제거

Ⅲ. 그 동안의 성과



Ⅲ. 그 동안의 성과



● 수사팀장 직할체제로 효율성 확보

- 1단 4팀 (11개 수사센터, 68명) ⇒ 1단 7팀 (11개 수사센터, 92명)
 - * 팀별 담당 직무분야 지정 및 지역 관할(4~5개 시·군)
- 3인 1조를 기본단위로 23개 수사반 운영, 멀티 수사관 化

● 단순 점검·단속수준에서 강제수사 적극 활용

- 피의자 구속 2009~2011년 '0 (ZERO)' ⇒ 2012년 2건, 2013년 3건
 - * 경미한 위반인 경우는 현장에서 주의 조치

“무늬만 경찰에서 진짜 경찰로 변신”

Ⅲ. 그 동안의 성과

● 법령개정 추진으로 특사경 조직 안정성 확보

-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신설)
-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추가 =>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등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책임있고 실질적인 수사조직으로 정비

- 4대악(불량식품) 척결 위해 검찰과 유기적 협조 => 합동단속 및 공조수사
- 전문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역량 강화 => 6명
- 중요범죄 전담 T/F팀 설치·운영(비상설) => 기획수사

2013년도 주요 수사사례



Ⅳ. 2013년 주요 수사사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자격자 판매상 25명에게 불법 유통
-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구속·송치

1급 발암물질 함유 폐수 무단방류 업자 적발

-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수 350여톤을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전자제품 로고 생산업자 구속·송치

Ⅳ. 2013년 주요 수사사례

이유식 식자재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 영유아들이 먹는 이유식 식재료(새우, 단호박 등)를 중국산 등으로 만들어 원산지 속여 판매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보관방법 미준수 6개 업체 적발 → 불구속 입건

음식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류 업자 적발

- 식당과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과 침출수 350여톤을 불법으로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구속·송치

V. 주요 과제



◆ 유관기관 및 시·군과 협업체계 구축

- 특사경의 역량만으로는 체계적·입체적 단속 미흡
 - 검찰 및 경찰, 식약처 등과 긴밀한 관계 필요
- 시·군과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
 - 식품·농축수산물 등의 일반적인 점검단속 → 시·군
 - 고질적·악질적이거나 파급이 큰 위해사범 → 道 특사경

V. 주요 과제



◆ 광역단위의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인력 확충

- 시·군 파견인력 위주의 조직운영으로 효과적 대응 한계
 - 파견직원의 복귀(2-3년)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사장

파견인원	복귀 인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7명	6명(9%)	22명(33%)	22명(33%)	18명(26%)

-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에 반영 실질적인 조직정비 필요
 - 시·군 인력을 道 인력으로 교체,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 경기도 인력 92명 중 67명이 시·군파견 직원(7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화성시

화성콜 스마트한 택시안심 서비스



스마트한 택시안심서비스

1. 과제개요

- 도입시기 : 2013. 10월
- 운 영 비 : 연 18백만원 (월 150만원)
- 운영체계 : 화성시 - 화성콜운영위원회 - 한국스마트카드(주) 업무협약
- 도입내용
 - ICT 기반 모바일 기술을 활용, 택시이용 시민의 승하차 및 이동정보를 사전 등록한 가족 등 보호자에게 실시간 전달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와 안심귀가 서비스 강화

2. 주요내용

- 시 통합브랜드 화성콜 택시에 기존 설치된 결제단말기와 GPS장치를 활용 (예산 최소화)
- 택시 요금을 계산하면 차량번호, 승하차 시간 및 위치, 이동경로 등을 승객이 사전에 지정한 휴대폰 번호에 SMS 전송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원하는 승객에 한함)

3. 현황 및 추진 필요성

- 여성, 노약자 등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심야시간 귀가시 강력범죄 발생문제 사회적 이슈
- 택시 이용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안심서비스 도입 필요

4. 추진목표

- 화성시 통합브랜드 화성콜 택시 내 기존 설치된 결제단말기 및 GPS장치를 활용하여 예산 부담 없이 단기간 내 도입 가능토록 추진

5. 실행방안

- **택시안심서비스 도입 공감대 형성, 시스템구축, 시민홍보**
 - 결제체제 변화에 따른 택시업계 합의 도출 ← 브랜드 제고로 이용승객 증가 설득
 - 택시안심서비스 도입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 TV, 라디오, 신문 등 사전홍보 실시
 - 운영업체 시스템 도입조건 협상 ← 장기운영으로 최초 제안가의 50%로 도입 합의
 - 결제단말기와 GPS프로그램 연결 셋팅, 이동정보수집동의서 접수, 홈페이지 정비 등

6. 추진 로드맵



7. 기대효과

- 택시이용 시민 및 가족의 불안감 해소, 범죄 사전예방 효과
- 믿고 탈 수 있는 안심택시 브랜드 제고 및 안전국가, 안심도시 신뢰 상승

스마트한 택시안심서비스



◆ 사업 도식화



화 성 시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5 -

3

기관간 협업추진

- ①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125
(안행부)
- ② 구제역 및 AI 가축질병 방역대책 127
(농식품부)
- ③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133
(복지부)
- ④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통합방재센터 운영 136
(환경부)
- 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체험캠프 안전대책 139
(여가부)
- ⑥ 건설현장 안전대책 142
(국토부)
- ⑦ 겨울철 대비 화재 등 재난예방활동 추진 144
(방재청)
- ⑧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148
(산림청)
- ⑨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 활성화 151
(안전보건공단)

1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안행부)

□ 현 황

- 중앙·지자체 등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보고·전파 누락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해 초동조치가 미흡할 경우 피해확산 우려
 - * 산업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체의 미신고나 지연신고 사례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특히 재난현장과 가까운 시·군·구의 역할이 중요

□ 신속한 보고(전파) 및 초동대응 체계 확립

- (보고·전파) 최초 신고접수 후 계통에 따른 신속한 보고와 지역단위 유관기관 전파, 이를 위한 교육 및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최초접수기관에서 최소 20개 기관 동시 보고·전파, 통보받은 기관은 2차로 최소 20개 기관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사전 목록 정비·훈련
 - * 보고·전파시 보고서에는 작성기관 및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명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주요 재난사항을 안행부(중앙안전상황실) 및 중앙행정기관에 직접(즉시) 보고
 - * 법 77조에 의거, 상황보고 누락 및 지연 시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문책요구
- (초동조치) 피해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
 - 시·군·구는 현장통합지휘소장(부단체장) 중심으로 지역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
 -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38.6)에서 상황실의 초동조치 및 지휘 권한 부여
 - 초기 상황전파 이후 진행상황 정보 공유 및 기관간 긴밀한 협조 유지, 심각단계 진행시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협조 및 당부사항

- 지자체는 단체장(부단체장) 주관으로 재난안전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점검
 - 관계자 교육, 비상연락망 정비,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마련 등

※ 안행부(중앙안전상황실) : Tel. 02)2100-3119 Fax. 02-2100-4094, mopas123@korea.kr

[사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폭발적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 ▶ 사고발생 시 인명·재산 및 환경오염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유효한 대응조치 필요

□ 보고·전파

- 내용 : 사고일시, 장소, 피해규모, 사고물질, 수습상황 등
- 보고기관 : 안행부(중앙안전상황실, 재난역량지원과 등), 방재청(재난상황실, 예방총괄과 등), 환경부(화학물질과), 시·도(상황실, 담당부서) 등 관계 기관
- 전파기관 :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KT,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 초동조치

- 화재 진압, 위험물 제거/차단 및 응급 복구(소방 협조)
 - 구조·구급(소방/보건소 협조)
 - 현장 출입 통제(경찰 협조)
 - 방제(유관기관 협조)
 -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소방서, 군부대, 인근 지자체 등
 - 주민 긴급 대피
 -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환경청 등과 협의 하여 정보발령, 주민대피 등 조치
 - 인명구조, 제독, 잔류오염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현장수습조정관·시장·소방서장 주관 하에 대응기관 회의 후 주민 복귀 여부 결정
- * 제독작업 및 오염도조사 미완료 상태에서 상황종료시, 2차 피해 증대

2

구제역 및 AI 가축질병 방역대책 (농식품부)

1

현황 및 문제점

▶ (구제역) '11년 4월 21일 최종발생 이후 현재까지 비(非) 발생 유지
* '13년 발생 8개국 90건(OIE 8월말 기준) : 중국, 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 (AI) '11.9.5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유지
* '13년 발생 10개국 146건(OIE 8월말 기준) : 중국, 북한, 인도, 네팔, 인도, 캄보디아, 멕시코, 부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 금년 가을(10월) 부터 내년 봄까지는 '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시기

○ 또한, AI는 철새 도래시기(10월 전후 개시)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므로 선제적 방역체계 가동을 통한 재발방지 추진 필요

□ 국내외 상황을 볼 때 구제역, 고병원성 AI 재발 가능성은 잠재

○ 구제역 바이러스는 7종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3종 혼합백신(O, A, Asia1형)을 접종('11.9월~)하고 있으나, 기타 유형(C, SAT1, SAT2 및 SAT3형)도 발생 가능

○ 전국 구제역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의 백신접종 미흡시 항체미형성 개체가 감염될 수 있음

○ 또한, 주변국 고병원성 AI 및 중국 신종 AI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I 바이러스 유입가능성도 상존

□ 2년 이상 구제역AI 미발생으로 지자체 및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약화

○ 전년보다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및 의무 방역활동이 저조 경향

* 방역의무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증가 : ('12년) 16건 → ('13.7월) 84건

* 번식돼지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 저하 : ('12년) 80.1% → ('13.8) 78.9%

○ 일부 지자체(과거 구제역 비발생 지역 등)의 방역점검 미흡

* '13년 하절기 일제점검(8.8~8.29) 적발율 : 중앙 17.9%, 지자체 1.7%

= 10.2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설정 및 방역상황실(24시간) 개소운영 =

국내외 검역·방역 강화를 통해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총력

▶ '14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 지위 회복 추진

* ('13.4월~10) 요건 충족 및 보고서 제출 → ('13.10~ '14.2) OIE 심의 → ('14.5) 정기총회 인증

▶ AI 청정국 지위 지속 유지 ('11.9.5일 OIE로부터 청정국 지위 회복)

□ (상시점검) 구제역·AI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 체제 운영

○ 중앙기동점검반(8반 16명) 주 1회 이상 정기점검 추진

○ 구제역 위험농가(NSP항체 검출) 밀착관리(조기도태 및 관리카드제)

○ 신고전화 1588-9060(중앙), 1588-4060(지자체) 불시 점검(분기별 1회)

* '13년 6월 신고전화 점검결과, 일부 시·군 연결이 미흡한 경우 발생·시정

○ 사전(事前)에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편성(13천명) 운영

○ 초등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가상방역훈련(CPX) 연 2회 이상 실시

* 가상방역 시·군 선정 훈련(구제역 : 5.15 경기 안성, AI : 5.6 전북 익산)

□ (백신접종) 차질 없는 구제역 백신공급 및 접종실태 관리

○ 농가별 담당공무원*(22천명) 실명제 운영 및 예방약(36백만두분) 공급

* 담당공무원 월 1회 이상 농장방문 및 주 1회 이상 전화·SMS 문자 발송

* 시·도별로 백신 취약지역 선정 일제검사 실시 (분기별 1회, 3개 시·군 이상)

○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방법 및 시기 홍보 (리후렛, 포스터 등)

* 특히, 양돈농가 중심 백신효과가 가장 좋은 비육돼지 8주령 접종 홍보

□ (국경검역) 공항만 주기적 점검 및 위험요인 지속 관리

○ 전국 공항만 41개소(국제공항 8·남북육로 2·무역항 31개소)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구성·운영(분기별 1회), 위험요인 발굴·보완

○ 국경검역관리 시스템을 통한 축산관계자 출입국 점검 및 관리

* 미신고자 등 위반자에게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 및 특별관리

□ (지도교육) 농가 자율방역 지도·교육 등 지속 전개

- AI 재발방지를 위한 가금 농가 준수사항 홍보 지속 전개
 - *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발판소독조, 출입통제 안내판, 생조류 차단막 설치 등
- 초등대응 능력 현장 대응강화를 위한 방역교육 신설·운영
 - * 전문교육기관에 공무원 및 방역요원, 농가 집중 교육 (2회/년)

□ (AI예찰·점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상시점검 지속 추진

-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 연중 운영
 - * 야생철새, 전통시장 판매 가금, 가금농장 등에 대한 검사
- 철새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 36개 집중관리 시·군 농가점검

□ (제도개선) 차량등록제, 돼지이력제, 차단방역매뉴얼 등 추진

- 축산차량 등록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 (9월말~10월)
 - * 전국 우시장(85개소), 도축장(130개소) 등 출입차량 일제점검 실시
- 소 이력제에 이어 돼지 이력제 도입 추진 ('14년~)
 - * 돼지이력제 시범사업('13년) 추진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 축종별 표준 차단방역 매뉴얼(모델) 제작 및 보급 ('14년~)
 - * (외국예) 일본 사육위생기준, 미국·영국·캐나다 차단방역 가이드라인 등

< 구제역·AI 위험시기(10월~5월) 특별방역 추진 >

-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24시간 가동)
 - * (평시) 비상연락 체계 운영 (상황실 미운영) → (강화) 24시간 상황실 운영
- 지자체 방역 강화를 위한 부처 합동 특별점검 추진 (안행부 등)
 - * (평시) 분기 1회 이상 방역실태 점검 → (강화) 매월 1회 이상 확대 (지역담당관 등 활용)
- 특별방역기간 중 '검역본부 국경검역 대책 상황실' 운영
 - * (평시) 중국 등 위험노선 휴대품 일제검사 1일 1편 이상 → (강화) 1일 2편 이상
- 구제역·AI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 관리 강화
 - * (평시) 공항만에서 출입국 점검 관리 → (강화) 출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추가 실시

◇ 2년 이상 구제역·AI 미발생으로 지자체 및 축산농가의 경각심 약화, 방역활동 참여 저조

□ 관계부처 협조사항

- ① **[안전행정부]** 지자체 방역활동을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지속 관리
 - 백신접종 및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평가 등을 통하여 불이익 조치
- ②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심사시 축산농가·가족 및 축산관계자에게 현장 검역관에 신고토록 적극 안내
- ③ **[기획재정부]**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구제역 등 예상치 못한 국가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재정지원 협조
- ④ **[환경부]** 남은 음식물을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야생조류 포획검사 등 AI 모니터링 협력
 - 남은 음식물을 가축 사료로 이용할 경우 가열처리토록 지도·점검
 -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야생조류'에 의한 병원체 유입으로 추정되므로, 야생조류 포획물량 산정시 적극 협력
- ⑤ **[문화체육관광부]** 가축전염병 예방수칙 및 방역대책 대국민 홍보
 - KTV 등 언론·방송사와 협력, 자막 광고 및 기획취재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① 구제역 백신구입·항체형성을 저조 농가에 대한 집중점검

- 가축방역 부서 이외 백신접종 실명제 담당 공무원 등 활용
-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리후렛, 포스터 등 적극 홍보
- 점검결과, 방역 위반농가는 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② 동물약품 지원 제외, ③ 축산정책자금 불이익 등 조치 철저

② 축산농장 주변 소독 철저 등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농장 등 방역실태점검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지속 교육·홍보
- 특히, 야생조류 서식지(하천, 저수지 등) 주변 농가 소독 강화 및 야생조류 농가유입 차단 철저

③ 위험시기('13.10~'14.5)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철저

- 방역상황실 운영, 특별 방역점검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및 AI 청정국 유지를 위해 특히 중요한 시기임

④ 검역본부, 수의사회, 방역지원본부 등 방역기관의 기관장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면담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협조 당부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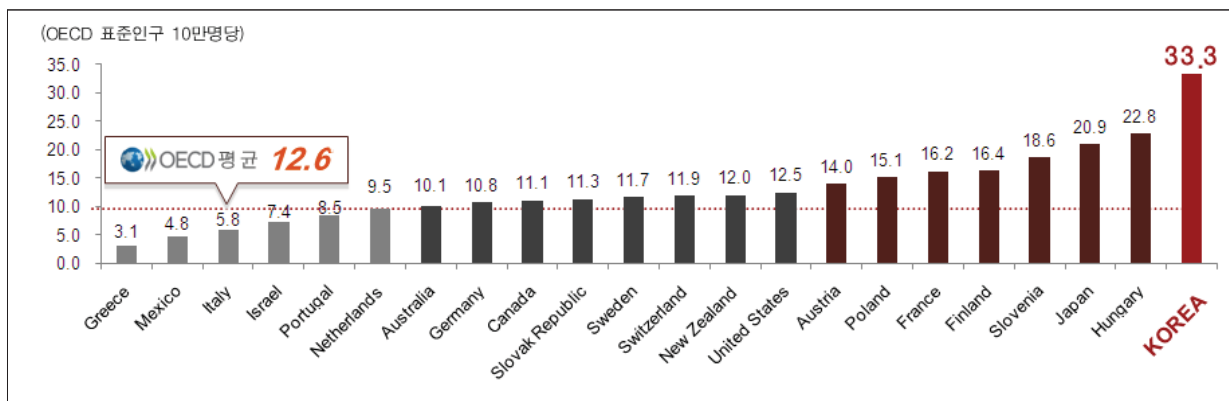
연간 상시 방역·검역 지도·점검·훈련

구 분	국내 방역		국경 검역
	지도·점검	방역·훈련	
매 일	특별대책 기간 중 24시간 상황실 운영현황 및 비상 연락 점검 (무작위·불시)	축산농가 자율방역 소규모 농가 : 129천호 (농협 공동방제단)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및 소독 (검역본부)
매 주	중앙기동점검반 지도단속 (백신접종, 소독, 기록의무)	전국 수요일 일제소독	미신고자 확인·관리 (검역본부/지차제)
매 월	장·차관 및 지역담당관 (108명) 현장점검	지자체, 일제소독 점검 - 특별기간 : 매월 1회 - 평시기간 : 분기 1회	구제역·AI발생국 여행 축산인 전화예찰* (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백신담당자(22천명) 예방접종 점검·독려	축산농가 전화예찰: 월2회 (방역지원본부)	* 입국후 7일/14일
	지자체,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지도·점검		국경검역 홍보캠페인
분/반기	매물지 합동점검 (해빙기,장마철 등 취약기)	구제역 및 AI CPX (상·하반기 1회 이상)	공항만 실태 종합점검 (검역본부)
	신고전화(1588-9060/4060) 분기별 불시점검	방역취약지역 점검 : 연2회 (농식품부/검역본부)	
연 간	지자체 합동평가 (연말)	지자체 가상훈련 (불시)	축산관계자 검역안내 서한 발송 (연1회)
	지자체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실태 점검 (연1회)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워크숍 (연말)	

□ 현황 및 문제점

- '12년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11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11.4%감소) 아직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11년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3.3명**으로 OECD 평균 12.6명의 2배 이상

OECD 표준인구 기준 국가별 비교 >



-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인해 최대 4조9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추정('09년 기준, 국회입법조사처, '11년)
- 높은 자살사망률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모든 부처와 사회 각 영역을 포함한 범사회적 대책이 필요함

□ ' 13년 추진실적

- 체계적인 자살원인 분석을 위한 자살 실태조사 실시
- 복잡하고 다양한 자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심리적 부검 등을 포함한 자살실태조사를 진행

○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응급실-정신과-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
- (취약계층 독거노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사회 노인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인자살예방 시범사업

* 도시형 1개소(성남시), 농촌형 1개소(여주군) 시범 운영 중

- (자살유가족) 자살유가족센터를 지원하여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가족의 정신적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복귀 유도

○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통한 인식개선

- (자살예방 홍보활동)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예방의 날 행사(캠페인)를 통해 자살의 위해성 및 생명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진행
- (자살예방 교육강화) 한국형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보고·듣고·말하기)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대응 역량 강화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노인돌보미, 교사 등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및 학생의 자살예방

* 노인돌보미 약 8,000명(연인원), 교사 180명(실인원)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 (자살보도방식 개선유도) 자살보도 권고기준안을 개정하여 언론계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언론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

*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개정 완료 및 언론계(기자협회, 여기자협회)에 전달식 진행

□ 향후계획

○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부-경찰청 협력 모형 구축

- 자살 위기상황 발생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경찰과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함께 출동 할 수 있는 모형 개발

* 약 5개 시도를 선별하여 출동모형 시범 운영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

□ 관계기관 협조사항

○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요청

- 자살시도 상황 발생 시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이 적극적으로 자살 시도자를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줄 것을 요청

○ 근거기반 사전적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공유 요청

- 경찰청, 통계청 등 자살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복지부와 적극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

○ 자살예방 교육의 보급을 위해 교육부, 여가부, 노동부 등 협조요청

- 학생, 국내여성이주자, 직장인 등에게 한국형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보고·듣고·말하기)가 적극 보급 될수 있도록 협조 요청

4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통합방재센터 운영 [환경부]

□ 관련현황

-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2.9.27) 이후, 빈번한 화학사고 발생
 - * 9월말 현재 64건 발생, 금년말 80건 상회 전망(10명 사망, 54명 부상)
- 산단 노후화, 취급물질 다양화에 따라 화학사고 우려 상존
 - * 유독물 취급업체 전수조사('13.3~5, 3,846개소) 결과 조사 대상업체 42% 가량에서 시설노후, 배관불량 등 화학사고 취약요소 발견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을 국민안전 21개 분야 중 1개로 선정, 중점 관리

□ 그간 추진사항

예방·대응 대책 추진

- ① 구미사고 직후 일사분란한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대두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정(3.21, 9.2)
 - * 화학사고 주관부처 일원화, 기관간 협업 개선 등
- ② '13년 들어 사고 지속발생으로 대응 뿐 아니라 예방대책 필요성 제기
 - ※ (대형사고 사례) 삼성 유출사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청주 산단 (주) GD(Global Display) 불화수소 누출 사고 등
 - ⇒ 유해화학물질 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 발표(3.6) 및 대책 이행·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제도화(6.4 공포, '15.1.1 시행)
 - *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유독물 영업 허가제 및 관리권한 환수, 하도급 관리 강화, 영업정지·과징금, 삼진아웃제 등 기업책임 강화

③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현장 문화 개선

⇒ 산업계와 함께하는 화학안전 종합대책 발표(7.5, 국가정책조정회의)

< 종합대책 주요 내용 >

-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 시설개선 투자 확대('15년까지 2.8조원), 작업문화·하도급 관행 개선 등
-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술·재정적 지원 병행
 - 영세·취약업체 안전관리 컨설팅('14년~), 노후·취약시설 개선 용자(중소기업 융자금 등 7,000여억원 활용)
-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 국민-기업-정부간 소통·협업 강화

대책 추진체계 확립

*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안」 마련(7.19, 안전정책조정회의)

① 대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업 강화

⇒ 6개 산단(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 합동방재센터 설립(~'14초)

-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화학물질정보 공동 활용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기능 통합 수행

* 센터별 환경팀·화학구조팀·고용팀·산업팀·지자체팀 5개팀, 40여명 인력 규모

② 화학사고 전문성 강화

⇒ 화학물질안전원 설립('13)

-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예방·대응·복구·사후관리 전과정 전문적·기술적 지원 전담

* 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예방, 대응매뉴얼 정비, 대응·복구 지원, 교육·훈련

□ 향후계획

○ 화학안전 종합대책 차질없는 이행 점검·관리

- ('13년) 관련법령 구체화, 담당인력 전문교육 등 대책 추진기반 확립
- (중·장기) 시설·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분야별 예방·대응 전문성 강화
 - * 산업계 대책반(경제단체 주도) 및 정부 준비반을 구성, 일관된 정책 추진 및 상호 이행점검·관리

○ 합동방재센터 운영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추진

- * 합동방재센터 장소 선정 및 인력협의(~9월) → 구성·운영 공동규정 마련(10월) → 6개 방재센터 개소(11월부터 순차적, '14초 완료)

□ 관계기관 협조사항

○ 종합대책 충실 이행

- 영세업체·노후산단 정밀안전진단·기술지도, 취약시설 개선 용자 등 정부 주요 과제 예산 반영 및 계획 수립·추진
 - * 산업계 과제에 대해서는 대책반을 통해 시설투자, 하도급 개선 등 지속 독려

○ 화학물질관리법 입법 취지를 반영, 기업 부담은 덜면서 화학안전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 * 민-관 협의체 구성, 하위법령(안) 마련 단계부터 공동 작업 추진 :
민-관 협의체 운영(9~12월) → 법령(안) 마련(12월) → 입법절차 추진('14년~)

○ 합동방재센터를 구심체로 부처간 협업 강화

- 공동 운영규정 마련, 화학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공동 대응훈련 등을 통해 효율적·체계적 예방·대응 추진
 - * 리더십 부재 등 수평적 협업의 한계 극복 필요

□ 추진 현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수련시설 유형별 3년 주기로 안전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하여 **종합 안전점검** 실시
 - * 점검주기 : ('11)수련원·유스호스텔 → ('12)수련관 → ('13)문화의집
 - * 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도 종합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 지자체 수련시설 담당부서 주관으로 매년 해빙기(3~4월), 여름철(6~7월), 겨울철(11~12월) 등 **계기별 특별 안전점검** 실시
 - * 지자체 안전관련 부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

○ 청소년활동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및 신고센터 운영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등록·공개하여 청소년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신고인증지원반 설치·운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6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불편 신고 및 안내 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및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인증제도 운영('06~) 및 활성화 추진
 - * 인증프로그램 수 : 1,162건(' 13.7월 기준)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도입

-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13.5.28)되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도입(11.29 시행 예정)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그 계획을 신고

□ 추진실적

- 태안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 계기,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전수 안전 점검 실시(7.29~8.30, 753개소)

- 그 외에 여가부 주관 표본점검 실시(8.2~8.12, 20개소), 여가부 및 교육부 합동점검 실시(8.5~8.23, 4개소)

* < 안전점검 결과 >

점검대상	점검시설수	점검결과		
		지적(건)	현지시정(건)	향후조치(건)
753개소	721	446	183	263

· 점검대상 중 휴지·폐지 등 37개소 제외, '13년도 신규등록시설 5개소 포함

- 청소년활동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통해 프로그램 등록·공개(8월~)

* 등록 프로그램 : 기관 1,714건, 프로그램 9,815건(' 13.9.25 기준)

- 청소년활동 신고센터 설치·운영(7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6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학교·청소년·학부모 대상 안내·홍보(학교 홈페이지 배너, 가정통신문 등)

-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요건 개선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개정하여 인증 심사기준 완화(10월~)

* 인증 심사기준 통합(14개→6개), 심사기간 단축(35일→25일), 당일형 프로그램 신청허용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수련시설 안전성 강화

- 여가부 주관 종합안전점검 및 지자체를 통한 계기별(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전수점검 연3회, 표본점검 연 1회 이상)

* 종합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13.11.29 시행) 및 시행주기 단축(3년→2년)

- 화재시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샌드위치패널(스티로폼) 등 화재취약 건축자재 사용시설 및 노후시설 기능보강 추진

* 샌드위치패널(스티로폼) 사용시설 : 54개소(공공 23, 민간 31)

○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위한 법률 개정 추진**(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 이동숙박형 외에 비숙박형(당일형, 정기형) 청소년활동으로 신고 대상 확대
-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결과공개 의무화
 -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정기적 실시 및 결과 공개 의무화,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요구
- 청소년활동 위탁 제한
 - 법률에 의해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단체와 개인 외에는 위탁 금지
 - 위탁 시에도 전부 및 중요 프로그램은 위탁 금지 등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
 - 대규모 인원 참가 또는 고위험 청소년활동의 인증 의무화

□ **관계기관 협조사항**

○ **관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강화**(지방자치단체)

- 계기별(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 적극 협조
- 안전점검시 기 지적사항 조치여부 지속 확인·관리
- 샌드위치패널(스티로폼) 등 화재취약 건축자재 사용, 노후화 공공수련 시설 보수·보강 협조
- * '14년 민간수련시설(31개소) 및 공공수련시설(23개소 중 6개소) 예산 지원 예정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시행 준비 철저**(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공무원 교육 참석 독려, 담당공무원의 신고제도 숙지
- 관할 지역주민 대상 사전 홍보·안내

□ 최근 주요 건설사고 현황

- (노량진 수몰사고, 7.15) 노량진 부근 상수도관 이중화 공사현장에 홍수가 침범하여 7명 사망
- (방화동 전도사고, 7.30) 올림픽대로와 강서구 방화동을 연결하는 도로공사 중 곡선교량의 상판이 추락하여 2명 사망, 1명 부상

* 최근 건설현장 인명피해 발생현황 (' 13.6월 이후)

일시	사고내용	인명피해	발주.인허가기관
6. 3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낙반	사망2	한국철도시설공단
6. 6	광주 주상복합 건축, 슬라브 붕괴	부상6	광주광역시
6. 25	제2롯데월드 건축, 거푸집 탈락	사망1, 부상3	송파구청
7. 15	노량진 상수도 공사, 침수	사망7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7. 22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수몰	사망1	한국철도시설공단
7. 30	방화동 접속도로, 교량상판 전도	사망2, 부상1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그간 추진실적

① 현장점검

- 여름철 건설공사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시행(5.14~6.7)
 - 책임감리(4.15~4.26) 및 품질관리(6.24~7.12) 실태점검도 시행
- 국토부 소관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7.29~8.23, 672개소)
 - * 지자체가 발주.인허가한 건설공사도 자체 점검 (8.1~8.23, 7.31 요청)

② 안전교육

- 공무원, 감리원,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 안전교육(4.18~4.26)
 - * 상반기(4.18~4.26, 2,214명 참석), 하반기(9.9~9.13, 3,386명 참석)

③ 안전대책 마련

-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소를 부내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종합적 안전대책 마련 추진 중
- 안행부(주관), 고용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건설협회 등과 함께 건설사고 예방대책 T/F도 진행 중

□ 지자체 당부사항

①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그간 잦은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발주 또는 인허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② 발주자로서 소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감리원의 적정한 배치, 꼼꼼한 현장 점검 등 발주청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

③ 인허가기관으로서 관할지역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가 인허가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임을 인식하고 발주공사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④ 범정부적인 안전대책 수립·실천에 협조 요청

- 국토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들이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마련 중으로 대책의 수립·실천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3. 10. 1 ~ '14. 2. 28 (5개월간)
- 추진목표 :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실현
 - 화재 등 재난취약시설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대응 체계구축을 통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 ('12년) 전체화재 중 겨울철 화재비율 34.3%, 인명피해 37.3%차지

□ 추진상황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CPR익히기」 홍보, 국민참여형 안전환경 조성
 -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및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자율안전관리 기반구축과 안전복지 제고
 -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 CEO안전통화제 추진
 - 취약가구 안전서비스 강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추진
- 대형화재 등 재난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 노유자시설 등 취약대상 65,239개 안전점검, 연말연시 등 시기별 안전대책
 -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저감대책 추진, 전기·가스 등 관련단체 합동점검
- 화재 등 재난현장 긴급대응 체계 구축·운영
 - 재난현장 지휘·조정을 위한 「긴급대응팀」 운영(3팀 12명)
 - 화재원인 분석 등을 통한 피해최소화, 폭설·한파대비 대응체계 구축

【그간의 추진사항】

-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2013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수립·시행 : '13.9.16
 - 4개 전략 16개 추진과제 58개 세부실천 과제
- 전국 소방지휘관 안전한 겨울철 보내기 실천 다짐 워크숍 : '13. 10. 1
 - 장소 : 중앙소방학교 / 250명 / 소방방재청장·안행부 1차관 특강(정부3.0)

□ 향후계획

- ('13.10~11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및 119안전 환경 조성
 -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점검 추진(65,239개) : 10월
 - 화재예방홍보 등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11.19) 등
- ('13.11~12월)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 화재 등 재난현장 초동대응능력 강화 : 소화기·소화전사용 및 CPR 익히기
 - 안전공감대 형성을 위한 CEO안전통화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 ('13.11~'14.2월) 화재 등 재난현장 긴급대응 및 맞춤형 구조·구급서비스
 -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단(6개 산단) 발대, 화재특별경계근무 강화
 - 119구급상황관리 업무역량강화(간호사 등 배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 관계기관 협조사항

- (공통사항)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협조를 위한 직장내 안전실천
 - 직장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및 자율적인 화재예방대책 수립 추진
 - 홍보물(현판, 입간판 등) 설치 및 산하기관·단체 등에 대한 방화활동 지도·감독
 - 전 직원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및 CPR익히기 운동 전개·홍보
 - * 캐릭터 등을 활용한 홍보용 동영상 제작 배포시 활용(10월중 예정)
 - 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등 활용(협조)
 - 표창 등 시상시 부상품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선정 권장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경보를 발하는 시설로 별도 전기 등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시설로서 한번 설치시 10년간 감시기능유지

- (안전행정부: 청사관리소) 불조심 강조의 달 현판 또는 입간판 설치
 - (기 타) 학교, 문화재,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추진으로 화재예방활동 강화·전파
 - 소방·전기·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안전점검 추진 등 협조
-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예정(10월중)

참고 1 | 관련 부처별 겨울철 협조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공 통 사 항	○ 직장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등 자율적인 화재예방 대책 수립 추진 * 전 직원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 운동 전개 ○ 홍보물(현판, 입간판, 포스터, 표어 등) 설치 및 게첩 ○ 산하기관·단체 등의 방화활동 지도·감독 및 자체 방화관련 조성 등 및 자체 전광판 활용 홍보 ○ 표창 등 시상 시 부상품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선정 권장
안 전 행 정 부 (정부청사관리소)	○ 국가 및 지자체 청사에 '불조심 강조의 달' 현판 또는 입간판 설치(화재예방 표어문구 등)
교 육 부	○ 학교시설에 대한 자율 방화대책 추진 ○ 학생관련 각종 불조심 행사 참여 협조 ○ 한국119소년단 불조심 홍보활동 적극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시설 방화활동 강화 및 소방시설 일제점검 ○ 복합영상관, 공연장, 청소년 관련시설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축사 및 특수농업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 ○ 도매·전통시장 등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 유류,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협조
보 건 복 지 부	○ 유흥업소 등 화재취약업소 예방활동 강화대책 추진 ○ 의료, 노유자등 사회중요시설 자체예방 활동 지도
고 용 노 동 부	○ 근로자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 토 교 통 부	○ 터미널, 지하철, 역 등 운수시설의 화재예방대책 마련 및 불조심 홍보
국 방 부	○ 군사시설물 화재예방대책 강구 및 합동 소방훈련 지원

참고 2 최근 2년간 겨울철 화재발생 분석

□ 총괄 현황

연도별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12년 전체		43,249	2,223	267	1,956	289,526,071
'11.11.1~'12.2.28		16,028	755	118	637	102,523,719
'12.11.1~'13.2.29		14,834	831	140	691	117,672,691

- ('12년) 전체화재 중 겨울철 34.3%, 인명피해 37.3%차지

□ 세부현황(원인별)

구 분		계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누출	교통사고	부주의	방화	미상	기타
'11. 11.1~ '12. 2.28		16,028	3,694	1,513	79	80	212	7,645	730	1,617	398
'12. 11.1~ '13. 2.29		14,834	3,954	1,686	75	86	207	6,387	523	1,480	436
전년 대비	건수	1,194	260	173	4	6	5	1,258	207	137	38
	증감 (%)	8.1△	6.5↑	10.2△	5.3△	6.9↑	2.4△	19.7△	39.5△	9.2△	8.7↑

- ('12년) 부주의 화재 43.1%(6,387건), 전기적 26.6%(3,954건) 등 순

□ 세부현황(장소별)

구 분		계	주거	비주거	차량	위험물 가게소등	철도선박, 항공기등	임야	기타
'11. 11.1~ '12. 2.28		16,028	4,090	2,337	1,880	2,283	1,598	889	2,951
'12. 11.1~ '13. 2.29		14,834	4,219	1,791	1,802	2,153	1,802	596	2,471
전년 대비	건수	1,194	129	546	78	130	204	293	480
	증감 (%)	8.4△	3.1↑	30.4↑	4.3△	6.1△	11.3↑	49.1△	19.4△

- ('12년) 비주거 시설 47.2%(7,011건), 주거시설 28.4%(4,219건)으로서 건축물(차량·임야 제외)에 대한 화재 대부분 차지함

□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및 전망

- 지난 10년간 연평균 35건의 산불로 27ha의 피해발생(가을철 기준)
 - 연간 산불 건수의 약 9%, 피해면적의 약 4% 차지
 - ※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전체의 59% 차지
- 강수량이 예년보다 다소 적어 건조하고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
 - 야외활동 하기 좋은 맑은 날씨에 등산·단풍을 즐기는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계획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운영 및 위험시기별 단계별 대응
 -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산불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 각 기관별 산불방지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조기 신고체계 구축
 - ‘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방지인력 운영·감독
 - ※ 전국 각 기관 시스템 담당자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
 -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신고 및 상황 관리 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
- 산불위험을 감안한 입산관리 강화 및 산림인접지 예방사업 철저
 - 등산로폐쇄구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고도화 추진(Naver, ~11월말)
 -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마을공동소각) 및 등산로·임도변 정리 실시
- 신속한 헬기 출동체계 가동 및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지속 추진
 - 전국 30분 내 산림헬기 도착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로 안전성 제고
- 합동 시범훈련 및 전국 지상진화경연대회 실시(11.6~7, 전남 화순)
 - 민·관·군 유관기관 공조대응체계 구축 및 지상진화 역량 강화

□ **유관기관 협조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산불계도·감시에 우편집배원 참여 및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속한 신고체계 협조
- **(국방부)** 군부대, 사격장 주변 산불 책임 진화 및 산불진화에 군병력·헬기 지원(물탱크 장착 헬기 비상대기)
- **(농촌진흥청)**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공동참여, 영농교육시 무단 소각행위 금지 및 산불방지 교육 실시
- **(소방방재청)** 지역별 산림관서 비상연락체계 유지, 산불발생 시 민가·시설물 보호 및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량 집중
-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산불예방 활동 강화 및 산불진화 지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지역의 산불예방활동 강화, 인화물질 소지행위 사전차단, 산불발생 즉시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직원들의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조기신고체계 가동

□ **자치단체 협조사항**

- 가을철 산불감시인력(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22천명을 조기 선발·교육하고 지역별 지상진화경연대회 개최로 산불진화 숙련도 제고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철저로 조기발견·신속 진화체계 확립
 -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실시간 위치확인 및 지도·감독 철저
- 산림 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 집중 추진
 - 추수 즉시 논밭두렁을 정리하도록 홍보활동 전개 및 공동소각사업 추진
- 입산통제구역 지정·등산로 폐쇄 등을 통한 입산자 실화 방지
 -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정보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산객과 산림휴양객의 불편과 민원 최소화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 활성화

기술이사 이 신 재

안전보건공단 소개

설립 목적

-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주요 현황

- 인원 : 1,370명
- 조직 : 본부(10실), 연구원, 교육원, 지역본부(6개소) 및 지도원(18개소)

주요 업무

- 산업안전보건 진단, 기술·재정·교육지원 및 자료 개발·보급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제협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 업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위험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직업병 역학조사 및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조사 관련 업무 등



기관간 협업 필요 제도 소개

④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착공 후 건축단계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사용단계 에서도 근원적으로 안전하도록 사용하기 위함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

④ 공정안전보고서(Process Safety Management)

-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화학설비에 대해서 설계 · 운용 · 비상대응조치 등 심사 · 확인함으로써 독성물질 누출 및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공장설치 전(前)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필수 법정제도임

협업 필요 과제의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전 공단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건축허가 신청 서류만으로는 계획서 제출 대상을 파악하는데 불충분
- 건축허가시 계획서 제출을 미리 안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민원제기

- ▶ 공장설립 등 승인 시에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부서(공장등록과 등)에서 공단과 협의 및 안내

④ 향후 산집법(제13조의2)에 공장 설립 승인 단계에서 협의근거 신설 검토

- 공장 설립(신설 · 증설 · 변경 또는 업종변경) 허가 · 승인 · 신고 시 실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단계에 협의 근거를 산집법 제13조의2 (인가 · 허가 등의 의제)에 신설

※ 예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

협업 필요 과제의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

2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험물 제조·취급 허가를 담당하는 소방서에서 공단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등 업무 협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 ▶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시 PSM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일 경우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협조체계 구축

3 '14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하여 **관련 부처 공유 필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및 **업종** 확대
- ▶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및 **대상물질** 확대



안전 앞에 늘 겸손하세요!

감사합니다.

4

부 록

□ 워크숍 참석자 명단

워크숍 참석자 명단

1. 중앙 부처 (42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	김성구	부	41
2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	조승훈	부	42
3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노병석	부	43
4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	이정우	부	44
5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황부기	정	16
6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	김경환	부	45
7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상욱	부	17
8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이재율	정	14
9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	정종제	부	18
10	안전행정부	비상안전기획관	김용순	부	21
11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이상영	부	46
12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	석정수	부	47
13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정길현	부	48
14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오재복	부	58
15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	김영환	부	75
1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	박종길	부	11
17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효식	대참	56
18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전병국	대참	55
19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전영건	부	77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20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	류춘열	부	78
21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팀장	문현석	대참	79
22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한상원	부	13
23	법제처	운영지원과장	이영호	부	80
24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장	이승우	부	81
25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상안전담당관	김선태	부	82
26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송재근	부	83
27	한국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재환경과장	이순종	부	84
28	국세청	기획조정관	나동균	정	10
29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돈현	정	108
30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태원	정	109
31	통계청	기획조정관	이상울	정	110
32	병무청	기획조정관	장갑수	정	111
33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김종출	정	112
34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김준철	부	113
35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권영수	정	114
36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정	115
37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남송희	부	60
38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박태성	정	116
39	특허청	운영지원과장	김성관	부	117
40	기상청	운영지원과	성인철	대참	118
41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장	남일석	부	119
42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	구자영	부	76

2. 지방자치단체

○ 시·도(18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부	87
2	부산광역시	안전총괄과장	박우근	부	88
3	대구광역시	안전행정국장	홍승활	정	86
4	인천광역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정	120
5		안전총괄과장	김순호	부	121
6	광주광역시	안전총괄과장	장성수	부	90
7	대전광역시	안전총괄과장	윤종준	부	91
8	울산광역시	안전총괄과장	권성근	부	92
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행정부지국장	윤호익	정	124
10	경기도	안전총괄담당관	최문환	부	93
11	강원도	안전총괄과장	선민규	부	94
12	충청북도	안전총괄과장	김선호	부	128
13	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정	89
14	전라북도	대응구조과장	강원석	부	125
15	전라남도	안전행정국장	명창환	정	122
16	경상북도	안전총괄과장	추교훈	부	126
17	경상남도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부	127
1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정	123

○ 시·군·구 (217명)

■ 서울특별시 (21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종로구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정	142
2	중 구	안전건설국장	이종두	정	143
3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	정	144
4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철희	정	145
5	종랑구	치수방재과장	정동락	부	146
6	성북구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부	147
7	강북구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	정	148
8	도봉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구	정	149
9	노원구	지방시설사무관	장운우	부	150
10	은평구	치수방재과장	오재영	부	151
11	서대문구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부	152
12	마포구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정	153
13	양천구	안전치수과장	김원철	부	154
14	강서구	안전치수과장	권을순	부	155
15	구로구	행정지원국장	김재순	정	156
16	금천구	시설사무관	배영기	부	157
17	영등포구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부	158
18	동작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준	정	159
19	관악구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정	160
20	서초구	재난치수과장	김장희	부	161
21	강남구	교통안전국장	조흥기	정	162

■ 부산광역시 (16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중구	도시안전과장	김광동	부	175
2	서구	안전총괄과장	하용주	부	176
3	동구	안전도시과장	강계수	부	177
4	영도구	도시안전과장	김재송	부	178
5	부산진구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정	179
6	동래구	안전재난과장	김정덕	부	180
7	남구	도시안전과장	권태선	부	181
8	북구	안전총괄과장	진명욱	부	182
9	해운대구	재난안전과장	고신식	부	183
10	사하구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부	184
11	금정구	도시안전과장	황좌연	부	185
12	강서구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부	186
13	연제구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부	188
14	수영구	부구청장	강재만	정	189
15	사상구	부구청장	조영서	정	190
16	기장군	재난안전과장	김정복	부	191

■ 대구광역시 (8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중구	안전행정과 담당	이재기	대참	192
2	동구	안전행정과 담당	김규철	대참	193
3	서구	안전행정과 담당	김영진	대참	194
4	남구	안전총괄과 담당	김시홍	대참	195
5	북구	안전총괄과 담당	신무원	대참	196
6	수성구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부	197
7	달서구	안전도시과장	장태영	부	202
8	달성군	담당(6급)	윤태영	대참	203

■ 인천광역시 (10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중구	총무국장	박성용	정	204
2	동구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부	205
3	남구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정	206
4	연수구	안전관리과장	이종승	부	207
5	남동구	안전관리과장	장춘일	부	208
6	부평구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정	209
7	계양구	안전관리과장	박규엽	부	210
8	서구	안전관리과장	전표순	부	211
9	강화군	안전행정과장	윤정혁	부	212
10	옹진군	안정행정과장	김정수	부	213

■ 광주광역시 (5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의동	부	214
2	서구청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부	215
3	남구청	자치행정국장	이우수	정	216
4	북구청	도시교통국장	이규남	정	217
5	광산구청	사회안전과장	손순애	부	218

■ 대전광역시 (5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동구	안전도시국장	송진국	정	219
2	중구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부	220
3	서구	안전총괄과장	송정현	부	221
4	유성구	안전도시국장	임철순	정	222
5	대덕구	안전도시본부장	이광덕	정	223

■ 울산광역시 (5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중구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정	224
2	남구	안전총괄과장	권기환	부	225
3	동구	건설도시국장	최창울	정	226
4	북구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정	227
5	울주군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정	228

■ 경기도 (28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수원시	안전총괄과장	임희철	부	229
2	성남시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부	230
3	고양시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정	231
4	용인시	건설교통국장	김관지	정	232
5	부천시	안전총괄과장	조기현	부	233
6	안양시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	정	234
7	남양주시	재난방재과장	심재용	부	235
8	화성시	건설교통국장	윤용택	정	53
9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	정	236
10	의정부시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부	237
11	시흥시	안전행정국장	박태진	정	238
12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정	239
13	광명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	정	240
14	김포시	안전행정국장	조성범	정	241
15	군포시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부	242
16	광주시	안전총괄과장	이봉휘	부	243
17	이천시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	244
18	양주시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정	245
19	오산시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부	246
20	구리시	재난관리과장	정연상	부	247
21	안성시	안전총괄과장	이종보	부	248
22	포천시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부	249
23	의왕시	시민안전과장	이성효	부	250
24	하남시	안전총괄과장	박충기	부	251
25	여주시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부	252
26	양평군	재난안전과장	이종효	부	253
27	가평군	안전재난과장	이훈구	부	254
28	연천군	부군수	김한섭	정	255

■ 강원도 (17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춘천시	안전총괄과장	김중기	부	256
2	원주시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정	257
3	강릉시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부	258
4	태백시	안전총괄과장	최봉순	부	259
5	속초시	부시장	함재식	정	260
6	삼척시	안전총괄과장	이선우	부	261
7	홍천군	부군수	박만수	정	262
8	횡성군	안전건설과장	남길현	부	263
9	영월군	안전재난관리과장	신형국	부	264
10	평창군	부군수	노재수	정	265
11	정선군	안전건설과장	서상기	부	266
12	철원군	부군수	조용건	정	267
13	화천군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	부	268
14	양구군	부군수	윤태용	정	269
15	인제군	건설방재과장	이성우	부	270
16	고성군	안전자치행정과장	최종석	부	271
17	양양군	부군수	박천수	정	272

■ 충청북도 (12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청주시	안전행정국장	김영철	정	273
2	충주시	안전총괄과장	구경희	부	274
3	제천시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정	275
4	청원군	부군수	김우종	정	276
5	보은군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부	277
6	옥천군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부	278
7	영동군	안전관리과장	김창호	부	279
8	증평군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부	280
9	진천군	안전건설과장	유영찬	부	281
10	괴산군	부군수	김희수	정	282
11	음성군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부	283
12	단양군	안전건설과장	양철윤	부	284

■ 충청남도 (14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천안시	건설도시국장	한상국	정	285
2	공주시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정	286
3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고영길	정	287
4	아산시	안전관리과장	정주왕	부	288
5	서산시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부	289
6	논산시	안전총괄과장	박귀의	부	290
7	당진시	자치행정국장	이은홍	정	291
8	금산군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부	292
9	부여군	안전건설과장	윤경록	부	293
10	서천군	안전총괄과장	정각진	부	294
11	청양군	부군수	정 송	정	295
12	홍성군	안전총괄과장	유영목	부	296
13	예산군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부	297
14	태안군	안전정책실장	김달진	부	298

■ 전라북도 (14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전주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부	299
2	군산시	재난관리과장	이강현	부	300
3	익산시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부	301
4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과장	백남종	부	302
5	남원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부	303
6	김제시	재난안전과장	김삼락	부	304
7	완주군	재난안전과장	김종혜	부	305
8	진안군	재난안전과장	양해두	부	306
9	무주군	안전건설과장	한상술	부	307
10	장수군	안전재난과장	김광수	부	308
11	임실군	재난관리과장	이원섭	부	309
12	순창군	안전건설과장	박재기	부	310
13	고창군	재난안전과장	김용운	부	311
14	부안군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부	312

■ 전라남도 (22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목포시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	정	313
2	여수시	기획경제국장	김두인	정	314
3	순천시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정	315
4	나주시	안전행정과장	김용옥	부	316
5	광양시	안전행정과장	황학범	부	317
6	담양군	안전건설과장	문태현	부	318
7	곡성군	안전건설과장	김진철	부	319
8	구례군	부군수	김채홍	정	320
9	고흥군	부군수	조정훈	정	321
10	보성군	부군수	신명수	정	322
11	화순군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부	323
12	장흥군	건설과장	김광열	부	324
13	강진군	부군수	박균조	정	325
14	해남군	부군수	정근택	정	326
15	영암군	부군수	고영윤	정	327
16	무안군	부군수	윤성호	정	328
17	함평군	안전건설과장	임의혁	부	329
18	영광군	안전경제과장	김희정	부	330
19	장성군	부군수	박기열	정	331
20	완도군	부군수	이준수	정	332
21	진도군	부군수	최성현	정	333
22	신안군	부군수	정승준	정	334

■ 경상북도 (20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포항시	안전정책과장	이영희	부	335
2	경주시	안전재난과장	이해근	부	336
3	김천시	안전재난과장	김병진	부	337
4	안동시	안전관리실장	김광섭	부	338
5	구미시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부	339
6	영주시	안전행정과장	이진원	부	340
7	영천시	안전정책과장	권종성	부	341
8	문경시	안전재난과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담당	342
9	의성군	부군수	김병삼	정	343
10	청송군	안전행정과장	정창진	부	344
11	영양군	안전재난건설과 안전기획담당	박영탁	담당	345
12	영덕군	안전재난건설과장	김성하	부	346
13	청도군	안전건설과장	김기환	부	347
14	고령군	부군수	김상운	정	348
15	성주군	부군수	윤상현	정	349
16		안전건설과장	김동호	담당	350
17	칠곡군	안전행정과장	윤준현	부	351
18	예천군	부군수	이왕용	정	352
19	봉화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부	353
20	울릉군	재난관리담당	최덕현	담당	354

■ 경상남도 (18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창원시	재난안전하천과장	서윤성	부	355
2	진주시	안전총괄과장	정종수	부	356
3	통영시	안전행정과장	강석수	부	357
4	사천시	안전행정과장	박철우	부	358
5	김해시	안전행정국장	정영순	정	359
6	밀양시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정	360
7	거제시	안전총괄과장	전덕영	부	361
8	양산시	안전행정국장	김흥석	정	362
9	의령군	안전관리과장	심영근	부	363
10	함안군	안전총괄과장	윤진용	부	364
11	창녕군	부군수	강해룡	정	365
12	고성군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부	366
13	남해군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부	367
14	하동군	재난관리과장	김한기	부	368
15	산청군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부	369
16	함양군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부	370
17	거창군	부군수	구인모	정	371
18	합천군	안전행정과장	김혜은	부	372

■ 제주특별자치도 (2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정	373
2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정	374

3. 공공기관 (68명)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1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이봉훈	정	1
2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관리처장	김병일	부	67
3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박기동	부	68
4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김성근	부	69
5	한국가스공사	기술부사장	이종호	정	2
6	한국전력공사	HSSE실장	이장표	부	70
7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기술본부장	조병옥	부	71
8	한국남동발전(주)	기술본부장	권순영	부	72
9	한국남부발전(주)	기술본부장	심야섭	부	73
10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조인국	정	3
11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최평락	정	4
12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장주옥	정	5
13	한국석유공사	HSE실장	김호균	부	74
14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	김상기	정	6
1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강철형	정	7
16	대한석탄공사	사업본부장	김순경	부	97
17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영전략본부장	김종렬	정	8
18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대행 (경영이사)	서동구	정	9
19	한전원자력연료	생산본부장	박철주	부	98
20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대행 (상무이사)	진기우	정	30
21	한전KPS(주)	경영관리본부장	최외근	부	99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22	한국전력기술	품질환경처장	최철승	대참	100
23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	나용환	부	101
24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본부장	강갑수	부	102
25	한국승강기안전 기술원	기획관리이사	소기옥	정	31
26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기술이사	이신재	정	61
27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보안실장	나도균	부	103
28	한국공항공사	시설안전본부장	이진구	부	104
29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지원부문장	반한용	부	105
30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박권제	부	106
31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정남정	부	107
32	한국철도공사	안전실장	나민찬	부	131
33	교통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용찬	부	132
34	한국시설안전공단	행정관리실장	이정석	부	133
35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오병수	정	32
36		안전실장	하복수	부	134
37	코레일테크	안전감사실장	윤상철	부	135
38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장	김시준	부	136
39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윤재길	부	137
40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공영훈	정	33
41	여수광양 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이진오	부	138
42	한국해양환경관리 공단	해양방재본부장	이완섭	부	139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43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부원찬	정	34
44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행정지원실장	김순묵	부	140
45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행정부장	최윤성	부	141
46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단장	오희완	부	164
47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장	이종필	부	165
48	서울SH공사	기술지원처장	이우필	대참	166
49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실장	최정석	대참	167
50	부산도시공사	건설본부장	송영범	정	35
51	대구도시철도공사	기술전무이사	김명진	정	36
52	대구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노재철	부	168
53	인천교통공사	안전방재단장	이용도	부	169
54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	부	170
55	광주도시철도공사	안전감사실장	윤철재	부	171
56	광주도시공사	사장	홍기남	정	37
57	대전도시공사	사장	홍인의	정	38
58	대전도시철도공사	안전감사실장	이양하	부	172
59	울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서린	부	173
60	강원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정용	부	198
61	경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	정	39
62	충북개발공사	관리처장	박윤승	부	199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역할	좌석
63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	류인출	정	40
64	전북개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소찬호	정	64
65	전남개발공사	인사총무팀 안전담당	박희수	대참	200
66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정	65
67	경남개발공사	사장	배한성	정	66
68	제주개발공사	인사총무부장	문봉숙	대참	201

4. 발표자 (우수사례 및 기관간 협업과제 발표)

<우수사례 : 4명>

소속	직위	성명	좌석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이상로	24
서울시	디자인개발팀장	강효진	2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26
화성시	건설교통국장	윤용택	53

<기관간 협업추진 발표 : 9명>

소속	직위	성명	좌석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	한성원	23
환경부	화학물질안전 TF팀장	서영태	54
국토부	비상안전기획관	정도영	55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윤효식	56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권재한	57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오재복	58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박두석	59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남송희	60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기술이사	이신재	61